

연구보고 2007-

공공법인 관련 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이 준 우

공공법인 관련 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for Public Corporation
Legislation

연구자 : 이준우(연구위원)

Lee, Jun-Woo

2007. 10. 31.

국문 요약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종전의 정부 산하기관, 비영리법인 등 대부분의 공공법인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공공법인은 공익법인에서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립목적과 설립근거를 가진다. 따라서 그 설립과 운영 및 감독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따라 이들 다양한 각 공공법인들을 하나의 법률로써 그 운영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립병원이나 국립대학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 중 일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2007년에 일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 경향은 법인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설립근거법률을 제한하거나, 동일한 목적과 조직을 가지는 법인을 이원화시키는 것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 현행 법체계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아울러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동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각 개별 공공법인의 설립근거법률의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의 설립근거법률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법률은 분리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과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

항은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설립근거법
률에서 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향후 공공법인 관련 법제
가 정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키워드 : 공공법인, 운영체계, 공공기관관리법, 대학법인법

Abstract

Most public corporations including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become subject to the Public Entities Management Act recently enacted. Those public corporations include public-service corporation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nd have various establishment objectives and grounds, therefore they shall be established, operated and supervised established in various ways. Nevertheless, systems and procedures for the operation of such various public corporations are provided for by the Public Entities Management Act by itself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to reform such operation.

A policy to convert part of State organs including national hospitals and universities or organs belonging to local governments into special corporations is being established, and an Act for incorporating part of national universities is enacted in 2007.

These legislation trends cause significant changes in a corporate system. An establishment ground Act is restricted by an Act on the operation of corporations, or corporations having the same purpose and organization are dualized.

This study analyzes these changes as well as problems of current legal systems and those arising from the enforcement of the Public Entities Management Act and presents problems of the Public Entities Management Act, measures for improvement thereof and reasonable elaborations of establishment ground Acts of individual public corpor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Entities Management Act.

A corporate establishment ground Act and an Act o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orporate operation may be divided, but fundamental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al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corporations shall be provided for by corporate establishment ground Acts other than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orporations. This study proposes to improve legal systems related to public corporations in accordance with such principles.

※ Key Words : public corporation, operation system, public entities
management Act, Act for incorporating universities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론	9
제 2 장 공공법인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령 체계	13
제 1 절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법인의 법령상·법리상 구분	13
1. 공공기관	13
2. 공공시설	16
3. 공공법인(公共法人; public corporation)	18
제 2 절 공공법인의 운영체계	29
1. 기본적 운영체계	29
2. 개별적 운영체계	31
제 3 장 공공법인 관련 법제 현황 및 법령체계 분석	35
제 1 절 설립 근거법과 관리·운영법제 현황	35
1. 근거법령체계	35
2. 설립법과 감독법 체계	36
제 2 절 공공법인의 관리·운영	40

1. 공공법인의 관리 관련 법률	40
2. 관리·감독의 현황과 유형 및 문제점	41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59
제 1 절 국립대학법인법 관련 개선방안	59
제 2 절 공운법 적용 공공기관 관련 법령 개선방안	74
1. 적용법률의 우선순위	74
2. 정비사항 및 모델 정비방안	77
3. 정비시 고려사항	90
4. 공운법 관련 개별법률 정비방안	90
제 5 장 결 론	163
참 고 문 헌	167

제 1 장 서 론

공익법인에서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립목적과 설립근거에 의하여 각종 공공법인이 설립, 운영 및 감독되고 있다. 이들 공공법인은 영리법인에 비하여 재정적·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와 특별한 감독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육성의 정도와 방법, 지도·관리·감독의 체계와 정도가 공공법인 등의 형태와 주무관청 등의 차이에 의하여 다양성은 물론 제도적 취지에 걸맞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병행하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NGO등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부문별로 통일된 관리와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개별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거나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리나 제도적 의의 및 공공법인 사이의 형평성 등을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을 하나의 법률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꾀하려는 점에서 일면 법리적 통일성과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각 개별 공공법인 등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획일성에 따른 비합리성이 적지 않다.

한편, 국가기관 내지 공공기관 중 일부 산하기관에 대하여 특수법인화정책이 최근 논의되고 있고, 국공립학교의 법인화 및 통폐합화,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같은 특수법인에 대한 개혁과 감독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정책방향에 비추어 법인제도 일반은 물론, 비영리법인과 공익적 법인을 포함하는 공공법인에 대한 법리와 법제와 운영이 실질적·제도적으로 합리성과 정책적 합목적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법제도의 연구와 운영실태의 조사·분석을 통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공법인의 사회적 가치와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서 『민간공익활동촉진법시안』, 『비영리민간단체법시안』 등이 제안되어 있고, 사립학교법개정법률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입법추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공공법인과 관련된 최근의 입법동향에 해당한다.

기존의 연구성과는 연구범위에 있어서 대부분 행정법상의 특수법인, 비영리법인의 세제상 문제(법인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최근의 동향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법인(공익적 법인)의 설립상, 자원조성상, 사업활동 및 경영상,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의 지원, 이에 따른 각종 규제와 감독 문제 등에 대하여 설립목적에 다른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지, 이를 위하여 적절한 지원과 규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공공법인제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상인 공공법인은 기본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각종 공익법인, 특수법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NGO를 포괄하여 연구범위에 넣는다.

연구방법에서도 각종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입법론적 개선방안 제시를 주된 방법론으로 채택하며, 민사법, 상사법, 세법, 회계감사법, 신탁법 등과의 연계 분석도 병행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법인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령 체계이다.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법인의 법령상·법리상 구분, 공공법인(단체)의 설립 및 법인의제 등에 관하여 고찰하며, 아울러 공공법인 관련

법제 현황 및 법령체계 분석을 피한다.

둘째, 공공법인의 육성·지원 체계와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 육성 관련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령 등을 중심으로 재원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살핀다.

아울러 공공법인의 설립목적과 성격에 따라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의 범위와 관련되는 합리적 규율의 정도를 살핀다.

셋째, 공공법인의 지도·감독체계와 내용이다.

공공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의 유형을 내용별, 근거법령별로 고찰하고, 그 감독기관의 유형, 감독의 내용으로서 회계감사, 공익성 감독, 조직구성 및 운영상 감독, 일반감독과 특별감독 등을 고찰한다.

넷째, 공공법인 관련 법제개선방안이다.

법인 유형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최근 입법되거나 입법과정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의 내용과 문제점 및 그 대안을 제시하며, 그 밖에 공익법인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등에 관한 법률, 산하기관관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분석과 개선방안은 공공법인·단체의 합리적 규율과 지원, 공익적 법인의 육성에 기여할 것이며, 공공법인에 관한 일반법 내지 기본법(산하기관관리기본법, 출연연법, 공익법인법 등)의 개별법적 보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장 공공법인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령 체계

제 1 절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법인의 법령상·법리상 구분

1. 공공기관

(1) 법령상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같은 법 제4조제1항).

이 법은 정책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같은 법에서 규율하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운영과 경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지 않는다는 입법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개념 범위가 정책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지정대상 단체(같은 법 제4조제1항)

- i) 특수법인인 정부출연기관
- ii) 총수입액의 1/2이상이 정부의 지원과 직결되는 기관
- iii)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50%이상의 지분소유기관 또는 30%이상의 지분보유기관으로서 정부가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iv) 위의 기관(i - iii에 해당하는 기관)이 iii)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
- v) 위의 기관(i - iv에 해당하는 기관)이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vi) 위의 기관(i - iv)의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
연한 기관

② 지정제의 단체(같은 법 제4조제2항)

- i)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사단 또는 사단법인
- ii)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 공공기관의 유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으로 약칭함)은 공공기
관을 다음과 같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대별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시 각각 2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있다.¹⁾

i)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ii)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④ 공공기관의 설립상 제한

i) 신설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타당성 심사제도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
가 자본금의 30%이상을 출자하는 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 공공기관의 개념이 어떤 기준에 의하느냐에 따라 대상범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획예산처 자체의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556개(-02.11), 350개(-04.1), 575
개(-05.2)로 각각 다르다. 금융, 언론공기업, 자회사 등 기관은 기본감독체계에서 체
외되며,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운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공공성 업
등 국제기준(IMF, GFS)에 따라 공공기관을 314개로 확정하고 있다.

30%이상을 출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의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7조).

ii) 특수법인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그 설립근거를 개별 법률에 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의 설립허가주의나 상법의 설립자유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특수법인이다.²⁾

이는 설립의 특별성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특별성도 아울러 인정되고 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관청의 감독권의 아주 제한적이지만,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확대되고 다양한 감독권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수법인은 현행 법률에서 ‘직접 특수법인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 경우’, ‘개념을 정의한 경우’, ‘간접적으로 특수법인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른 바,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경우로는 한국환경자원공사(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2조), 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2조), 한국은행(한국은행법 제2조),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법 제4조),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이다. 이들은 ‘법정 자본금이 있는’ 특수법인으로서 정부가 일정비율의 자본금을 법률에 의하여 출자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관여하는 정부투자기관 등과 구분된다.

개별법령에서 특수법인의 개념을 정의한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

2) 민·상법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의 비영리목적을 가진 법인과 주식회사·유한회사·합병회사·합자회사 및 민간회사를 설립되는 일반법인과 구별된다. 특별행정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거나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명식, 특수법인론, 한국학술정보(주), 2005, p.46.

처리규칙, 제1조 등에서 개념을 정의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을 승인하는 단체’³⁾ 등의 규정례를 볼 수 있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에 따른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특수법인을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20여개 법률에 열거하고 있고,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한 법인은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2.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물적 시설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실정법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것을 관리하는 인적 주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공공시설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유체물의 집합체로서 공물의 일종’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으며,⁴⁾ 영조물과 공공시설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⁵⁾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는 물적 시설을 총칭하며,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인 강학상의 영조물의 개념과는 구별하는 견해이다. 후자의 견해는 법령상의 영조물 개념에 국한한 입장이지는 하지만 공공시설은 단순히 물적 시설로서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특수법인이 될 수 없다. 물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감사원법 제23조제7호.

4)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1997, p.326.

5) 박윤훈, 최신 행정법강의 I, 박영사, 1997, p.383.

영조물은 광의로는 국가 등 행정주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공한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말하며, 광의의 영조물 중 행정적 목적, 정신적·문화적 목적의 비영리적 사업을 행하는 것(예, 국공립 학교)만을 협의의 영조물(행정적 영조물)이라고 본다.⁶⁾ 이러한 영조물은 영조물의 주체에 따라 국영영조물, 공영영조물, 특수법인영조물로 구분된다. 영조물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영조물법인과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영조물로 구분하기도 한다.⁷⁾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법인영조물이며, 영조물법인은 모두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시설 중 영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의 영조물 개념 정의에 따르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영조물법인에 속하며, 관리되는 물적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공공용시설’을 “철도·항만·공항·주차장·운하·광장·녹지·公共空地·수도·共同溝·운동장·하천·遊水池·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은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 포함) 기타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판매·업무·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경봉 도시형공장,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을 열거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2조).

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6, p.1131.

7) 상계서, pp1131~1132.

3. 공공법인(公共法人; public corporation)

公法人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의미하지만 公共法人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기업을 의미한다. 즉 공공기업체를 포함하는 공적 법인을 의미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제5장 지방세 경감규정에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다.

공공법인과 공공기관의 구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운법’에서 해당 기관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공공법인에 해당한다. 원래적 의미로 「기관」은 독립성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일정한 업무를 분담·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하고,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조직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은 ‘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부설기관·부속기관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지칭한다.

공공단체는 공공법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법인과 단체 즉, 법인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유재산법」처럼 좁은 의미인 공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동법 제26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와 「국가공무원법」처럼 특수법인은 물론 법인격이 없더라도 공공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종 단체를 포함하는 경우(동법 제8조의3)가 있다.⁸⁾

8)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①법령에 dmo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②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③정부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 ④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공무원 후생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으

이렇게 본다면, 공공법인과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법률에서 그 입법목적상 약간의 적용대상 법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개념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용어사용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공법인’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은 ‘공공법인’과 다를 바가 없다.

공공법인은 민법상의 개념은 아니며, 조세감면규제법 등 개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부산하단체’ 또는 ‘정부산하 비영리법인’과도 유사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⁹⁾

국무총리훈령인 『정부산하단체의 설립 및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규정』에서는 정부산하단체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심사대상 산하단체를 ①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치되는 법인, ②민법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도의 육성법·지원법 또는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③기타 공익성이 강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의로 보면, 특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기능 중 일부를 분담수행하는 특별법인만을 뜻하는데, 위 규정에 따라 본다면, “정부조직법상의 정부조직은 아니면서도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었거나 별도의 육성·지원법 등을 적용받는 공익성이 강한 법인”이 공공법인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투자기관, 공단, 기금, 사업단, 감독원,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공사, 기타 특수 비영리 재단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일부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 일부 비영리 사단법인 등이 이에 해

로 열거하고 있다.

9) 이 글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을 협의의 개념으로 하고, ‘정부산하단체’를 포함한 경우를 넓은 개념의 ‘공공법인’으로 하여 사용한다. 『공익법인의설립 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익법인’과는 개념상 구별한다.

당할 것이다.

정부 또는 주무관청의 통제정도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정부산하단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공법인은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조직이지만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며 그 독립의 정도는 다양하다. 정부조직만큼의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공공부문에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가 크거나 조직의 공공성 정도가 큰 조직일수록 관련 정부부처의 통제를 많이 받게 된다.

(1) 공공법인의 유형

① 성격에 의한 구분

설립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면, 정부투자기관, 공공사업 집행기관, 정부출연 연구·교육기관, 금융기관, 문화·체육·복지단체, 특정집단이익단체, 기타 특수목적 수행단체로 나눌 수가 있다.

i)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사업상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주로 주식회사형태 또는 공사형태로 되어 있다. 공사 17개(한국전력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은행 4개(국민은행, 산업은행 등), 주식회사 2개(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로 총 23개가 있다.

ii) 공공사업 집행기관

공단, 사업단, 재단 등 국가의 특정 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주로 국가시설의 관리, 연금·보험등 공공사업을 수행한다. 공단 19개(국민연금관리공단등), 사업단 3개(한국국제협력단 등), 재단 4개(한국학술진흥재단 등)가 있다.

iii) 정부출연 연구·교육기관

정부가 정책적 연구 및 특수분야의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50여개에 이르지만, 그 설립근거법률이 통합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개별 설립법률을 따로 두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구분된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계가 24개, 표준과학연구소 등 과학기술계통이 20개 등은 각각 ‘정출연법’ 및 ‘과정출연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

그 이외에 정부보조연구기관이 1개(한국체육과학연구원), 비출연보조기관이 4개(해운산업연구원 등)가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정부출연교육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과 정부보조교육기관인 한국어업기술훈련소, 한국해기연수원이 있다.

iv) 금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3개(한국은행등), 기금 3개(신용보증기금 등), 기타 3개(자산관리공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있다. 정부투자기관인 4개 은행은 제외한다.

v) 문화·체육·복지단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12개가 있고, 99%정부출연기금인 한국장학기금과 20% 정부출연기금인 문예진흥기금이 있다.

vi) 특정집단 이익단체

상호부조를 위한 협회, 조합, 유족회 등 72개와 일부 정부출연기금 2개(축산진흥기금 등), 전액 민간출연기금 3개(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등)가 있다.

vii) 기타 특수목적 수행단체

의료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과 대한적십자사가 있고, 언론기관으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 등과 기타 한국소비자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이 있다.

② 설립 근거에 따른 유형

법인의 설립이 특별법에서 직접 설립되는 경우, 특별법상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경우,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민법의 설립허가주의 원칙에 따라 설립되는 경우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 i)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ii) 특별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허가: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 인가: 산업단지관리공단
 - 지정: 수출검사기관
- iii) 육성법(또는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육성법의 적용
 -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iv)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또는 재단법인)
 -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 등
- v)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 vi)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지하철도공사
- vii)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50조 또는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 도로·주택 및 시장등 생산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운영 또는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공사)

viii) 지방공기업법 및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시·도의료원

③ 출연자·설립목적에 따른 분류

공공법인은 i) 출연자, ii) 설립목적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i) 출연자(설립자) 기준

- 정부출연 공공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법인
- 공공법인 출연 공공법인

ii) 설립목적 기준

- 공공목적: 특수재단법인
- 공공성이 강한 사업 목적: 공공기업체
- 연구기관과 비연구기관

출연자 내지 설립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는 그 감독관청 및 감독권이 다르게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정부출연 공공법인은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설립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이 감독관청으로 된다. 이는 민법의 설립허가주의에 따를 때 그 주무관청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설립근거가 정부출연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법률이며, 지방자치단체출연 공공법인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설립하며, 재출연 공공법인은 모법인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의 설립근거법 또는 개별 법률로 설립하며, 주무관청은 모법인과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52개 기관으로 연구회 4개를 포함하여 경제·인문계열의 연구기관은 주무관청이 국무총리이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은 주무관청이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되어 있다.¹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는 개별 설립근거법률¹¹⁾에 의하여 연구회와 무관하게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설립·운영되고 있다.

비연구 출연기관은 28개 기관이며, 다음 표와 같다.

소관부처	출연기관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원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요업기술원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한국노동교육원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10) 종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될 때에는 주무관청이 국무총리로 일원화되어 있었으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과학기술계 21개 연구기관 및 3개 연구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연구기관으로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11) 한국국방과학연구원법(법률 제3861호), 국방과학연구소법(법률 제2258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5490호),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참조.

제 1 절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법인의 법령상·법리상 구분

소관부처	출연기관
건설교통부	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농림부	농림기술관리센터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합 계	28개 기관

(2) 공공법인의 기능별 구분

공공청사 중 연면적 1,000㎡이상인 건물의 신축과 증축 등과 관련하여 공공법인의 유형을 17개 기능으로 분류하는 예도 있다. 공공시설의 관점에서 공공청사가 포함되는 바,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용도변경은 허용 절차에 차이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17개 기능 공공법인의 사무소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준하여 그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 17개 기능 공공법인

- 문화/군사/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정보통신/관광/체육/예술/국가정책연구/의료/보건위생/첨단과학/국제협력/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공법인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17개 기능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관할구역이 수도권에 국한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
- 관할구역이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3) 각 개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非營利法人의 概念範圍

1) 세법상의 개념

①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시행규칙(제17조)은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대상 비영리법인 30종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특수법인(제1호~제29호)이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정한 법인을 대상법인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법인세법령상의 비영리법인은 넓은 의미의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법인과 특수법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등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대상과 관련하여, 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는 i)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ii)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iii)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iv)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v)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vi)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vii)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viii)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ix) 이상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¹²⁾을 영위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비영리’보다는 좁지만 ‘확대된 공익’의 개념을 살필 수가 있다. 개념상 비영리목적은 i) 공익과 무관하지만 비영리인 경우 즉, 공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목적, ii)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iii) 직접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i)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고, ii)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등’이 이에 해당하며, iii)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이 이에 해당한다.¹³⁾

이러한 개념분석은 직접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는 아니하나 궁극적으로는 공익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비정부조직(NGO)에 의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의 경우와 같은 사례에 실제로 적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2) 공공단체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에 대응하는 기법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사용례는 동일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해당단체를 열거하고 있는 경

12)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는 한국갱생보호공단, 의료보험조합등이 운영하는 사업,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과학관이 운영하는 사업 등 19종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13) 공공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공익의 범위 개념은 명확하게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공공법인에는 공익법인, 특수법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형태를 띤 정부투자기관, 특정집단이익단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하여 직접 공익의 실현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우¹⁴⁾는 드물다. 헌법에서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에 관한 조항(헌법 제29조)과 국회의원의 이권개입금지에 관한 조항(헌법 제46조 제3항)에서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 조항상의 개념이 동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배상의 대상단체로서 공공단체는 최소한 해당 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단체여야 하고, 국회의원의 이권개입금지는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실정법상의 공공단체를 정리하면, i)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i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법인, iii)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¹⁵⁾고 하겠다. 따라서 공공단체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며, 이러한 점에서 위의 공공법인 또는 정부산하단체와는 사실상 구분된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반드시 이러한 개념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i)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경우(도시재개발법 제27조제1항), ii) 각급학교를 포함하는 경우, iii)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 공기업 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제1항), iv) 국가·지

14)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5)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개념이 대표적인 것이다.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는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은 □□공공단체의 범위□□ 안에 i)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ii)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iii) 정부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 및 iv)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공무원후생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을 열거하고 있다.

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종교기관·의료기관·학교·기업체 및 사회단체등을 제외하는 경우(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v)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3) 공익단체

기본적으로는 비영리일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법인격 유무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규정하는 사업¹⁶⁾을 하는 단체」를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사실상 공익법인과 구분이 애매하다. 다만, 대부분의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다는 점에서 공익단체는 ‘인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⁷⁾

개별법의 규정사례를 보면, 비영리법인과 구분하는 예(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 제1항,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단체를 공익단체로 보는 예(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구분하는 예(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로 나눌 수가 있다.

제 2 절 공공법인의 운영체계

1. 기본적 운영체계

공공법인의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공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는 「공익법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7)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인가주의를 택하고 있는 예는, 변호사회, 상공회의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자동차운수사업조합, 수출조합, 해운조합, 의사회 등 각종 조합과 일정한 전문자격인 단체로서 강제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형 구분 및 평가·감독 시스템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운법은 공공법인(공공기관)의 유형화를 피하고, 그 유형별로 감독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개별 법률에 의한 부분적 운영·감독체계의 일반화에서 확대된 것이다.¹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공법인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일원성·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그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통일적 기준을 정하고, 임원의 임면절차, 경영실적의 평가 등에 대하여도 공통된 사항과 개별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체적으로 기본법 내지 일반법적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결과, 종전의 각각의 공공법인 설립근거법령 및 관리·운영 개별법령은 폐지되거나 정비되어야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설립근거법과 관리·감독법의 구분 입법체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설립근거법률에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던 입법 체계에서 변화된 것이며, 각각의 공공법인들에 대하여 그 관리·운영 및 감독상의 특성을 인정하던 정책방향을 일원적·유형적 통일화로 선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공기업민영화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18) 일본의 경우는 2006년에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공익법인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福島達也, 新公益法人制度, 學陽書房, 2006. 참조.

법률』 등에 의하여 부문별 공통적 관리·운영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던 체계와 각 개별법률에서 각각 해당 법인을 설립·운영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던 체계와 다른 운영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공운법은 아직 공공기관의 지정을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크게 유형화하여 지정하고, 점차 그 적용대상을 넓혀 가는 것을 예정하고 입법하였기 때문에 일차적을 폐지되는 법률의 적용대상 법인을 지정하고 있다. 공운법의 적용시 상충되거나 보완하여야 할 개별법률의 정비문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2. 개별적 운영체계

공공법인은 일반적으로 그 설립근거 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감독된다. 물론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법인의 운영체계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및 임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 체계에 있다. 즉, 설립·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각각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하며, 구체적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는 체계에 있다. 공기업의 경우 특히 출자·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주식회사의 운영체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대주주로서 정부가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역할이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특수한 운영체계를 특별법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다.

공공법인의 감독체계는 주무관청이 감독청이 되고, 직접 감독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감독청과 법인의 중간에

지도·관리기관을 두는 예도 없지 않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 ‘연구회’체제를 채택하고 각 개별 연구기관(법인)에는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감독청과 관리기관이 역할 분담을 하는 체계도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내부 경영조직이나 위원회를 직접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대행하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현행 법체계는 공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보다는 경영조직을 구성하고 경영을 감독하는 데에 비중을 두어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를 피하고 있다.¹⁹⁾

법인의 설립과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설립근거법률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는 유형과, 설립근거와 설립목적 등 가장 중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관으로 정하게 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개별 설립법률을 둠으로써 설립법과 운영·감독법이 일원적으로 된 경우이고, 설립근거법률을 독립된 개별 법률로 입법하지 않고 『법인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특수법인의 설립과 설립목적사업 등을 아울러 규정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중요사항만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²⁰⁾

19) 주무관청의 감독권은 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그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지시·명령하거나 조사·보고하게 함은 물론 각종 동의·승인권 행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직접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감독권의 행사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실질적인 근거를 찾으려면 설립자 내지 출자자·투자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공공법인의 경우 대부분 정부가 설립자 내지 출자자 등에 해당하며, 정관의 실질적 내용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단법인의 최고 의사는 정관이며, 정관은 설립자의 설립목적과 의지 및 운영방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관변경의 승인을 감독관청이 가지는 근거도 법인의 이사(이사회)가 임의로 설립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관의 본질적 부분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단법인의 동질성과 영속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0) 예컨대 지적공사의 경우에는 『지적법』에서 공사의 설립 및 목적사업 등에 관한 몇 개의 규정만을 두고, 환경관리공단의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처럼 유사한 성격의 법인들의 개별 설립법률을 통합하여 하나의 설립법률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설립법률의 예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설립과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²¹⁾. 이 경우에는 감독청이 동일하거나 설립목적·기능이 유사한 성격의 법인은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경우이다.

최근의 ‘공운법’도 비록 설립근거법률은 각 공공기관마다 대부분 따로 제정되어 있고 그 설립근거법률에서 상세한 운영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공기관으로 유형화되는 공공법인들의 일원적이고 통일적 운영과 관리를 꾀할 목적으로 하나의 우선적 운영·관리 법률을 따로 둔 경우이다.²²⁾

이와 유사한 경우는 예컨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비영리법인 중에서 특히 공익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법과는 별도로 특별규정을 두어 규율하면서, 이들 공익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입법례에 해당한다.²³⁾

21) 유성재·손태원·이정원,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경영모형, 2002, p.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출연연구소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2, p.10 이하.

22)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06.8, p.57 이하.

23)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말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서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제7조), 『영재교육진흥법』(제8조) 및 『보훈기금법』(제7조제6항)에서는 개념의 정의없이 ‘공익법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 3 장 공공법인 관련 법제 현황 및 법령체계 분석

제 1 절 설립 근거법과 관리·운영법제 현황

1. 근거법령체계

공공법인의 설립과 관리·감독 등은 그 근거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다만, 민법의 비영리법인과 특수법인의 경우가 다르며,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설립근거법령에서 설립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는 입법례와 설립 근거법률 이외에 따로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입법례로 나눌 수가 있다.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민법 및 주무부처의 허가가 설립의 기초가 되며, 주무부처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제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그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 각각 특수법인마다 존재하는 경우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법인을 통합 관리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및 별도의 관리·감독 법률이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관리·감독기관이 하나인 경우와 복수인 경우로도 구분할 수는 있다.²⁴⁾

가장 넓은 범위의 공공법인을 그 적용범위로 하는 법률은 공운법이다. 일단은 314개 기관을 대상범위로 하고, 1차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적용하는 기관이 94개 기관이다.²⁵⁾ 종전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77개 기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였고, 종래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도로공사 등 14개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 바가 있다.²⁶⁾

24) 공운법의 경우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감독하는 예에 해당한다(동법 제46조 이하 참조).

25)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06. 6, p.58 참조.

26) 이들 2개 법률은 공운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음(공운법 부칙 제2조).

중전의 출연연법(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5개 연구회를 포함하여 52개 출연연구기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설립근거법의 기능과 함께 관리·감독법으로서도 기능하였다. 민영화법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밖에는 각각의 개별 특수법인법률이 있다.

2. 설립법과 감독법 체계

(1) 일원적 체계 유형

이는 설립근거법과 관리·감독법이 동일한 경우이다. 공운법 제정이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출연연법에 의한 연구기관등이 이에 해당하며, 정산법 및 정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체계의 장점은 설립근거법과 관리·감독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과 운영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적·통합관리법이나 개별관리법이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인의 특성과 차별성을 인정하는 폭이 다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1) 정산법의 적용이 없는 대상 기관(동법 제3조제2항)

정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은 다음의 3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별표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i)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ii)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iii)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기관
- iv)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 v)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출연한 법인
- vi)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는 기관
- vii)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 viii)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동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
- ix)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출자한 회사
- x)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xi)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xii) 「공기업을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기업

②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③외교·안보관련 기능, 학술연구기능, 법률구조·갱생보호기능 또는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공운법의 적용이 없는 대상 기관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관 즉,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i)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공운법 제4조제2항제1호)²⁷⁾
- ii)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공운법 제4조제2항제2호)²⁸⁾

한편, 실질적으로는 전체 적용예상 314개 기관 중 94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²⁹⁾으로 지정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특히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별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관리·운영된다고 볼 수가 있다. 즉, 내용상·실질상 적용이 없는 기관으로 된다고 하겠다.

(2) 이원적 체계 유형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설립근거법이 따로 있고, 그 관리·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원적 체계에 있는 공공법인에 해당한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으로 개념 정의된 기관 중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적용

27) 정산법 제3조제2항제2호와 같음

28) 정산법 제3조제2항제1호 전단과 같음.

29) 이들 기관의 경우에도 개별 설립근거법을 가지고 있는 바, 80여개에 해당한다.

범위상의 문제가 전제되어 있다.

적용대상 기관 즉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하여 공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 공운법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법 제2조제2항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법 제11조제3항 관련)
-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 그 법률의 규정(법 제18조제4항)
- 감사위원회의 설치(법 제20조제3항)
- 국가재정법(법 제23조제2항: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심의기구의 설치 예외(법 제23조제1항)
-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추천위원회(법 제26조제2항 단서)
-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절차(법 제26조제3항 단서)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지정된 해의 보수: 법 제33조제3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안 의결절차(법 제40조제3항 단서: 사원총회,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경우)
- 경영실적평가 제외(법 제48조제2항: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의 평가결과 활용)
- 병행적용(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내용과 범위: 법 제51조)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법 제52조)

※ 공운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률(부록 참조)

제 2 절 공공법인의 관리 · 운영

1. 공공법인의 관리 관련 법률

공공법인의 관리는 법령의 제명에서 보통 ‘관리’,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체는 관리 ·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민법 제32조 이하의 감독관청의 감독권³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설립근거법에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현행 공운법이나 출연연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동일 · 유사한 공공법인을 하나의 관리 · 감독법률로써 규율하는 경우도 있다.

- i) 출연연구기관: 출연연법
- ii)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 iii) 공공기관: 공운법
- iv) 공익법인: 공익법인법

한편, 『관리』의 개념을 넓게 보아 육성 ·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육성 · 지원법과 일반적인 지원법률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는 있다.

- i) 개별 · 직접 지원: 개별설립근거법률
- ii) 일반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보조금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30) 민법 중 법인의 감독과 관련되는 규정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와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법원에 의한 감독(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제86조(해산신고),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등이 있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 관리·감독의 현황과 유형 및 문제점

(1) 공운법상 공공법인의 관리·감독 현황과 유형

공운법은 상업성 및 공공성을 기준으로 하여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차별화하고 있다.

유형		운영체계 설계방향
공기업(28개)	시장형(4개)	자율보장 및 내부견제시스템 보완
	준시장형(24개)	자율확대, 외부감독 강화
준정부기관(66개)	위탁집행형(52개)	주무부처와 정책연계성 확보
	기금관리형(14개)	기금운용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이러한 유형별 관리방식은 종전의 설립·운영 근거법률에 따라 민영화법, 정투법, 정산법으로 그룹지어 관리하던 방식에서 업무특성에 따라 재분류하여 관리체계를 재편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주무부처 및 설립근거법에 따라 규율하던 체계에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권을 보장하면서 아울러 병행적 관리·감독을 추가한다는 것, 업무특성별로 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관리·감독을 유형화·공통화하여 통일성을 꾀하려는 점이 특징이다.³¹⁾

31) 이 결과 확실성에 따른 개별 설립근거법률과의 충돌이 적지 아니함은 제4장 이하의 개선방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2) 공공법인 일반의 관리·운영 구조

1) 자율 관리 구조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법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외의 비영리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더라도 i)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³²⁾, ii)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³³⁾은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공운법 제4조제2항).

공공법인의 자율에 기초한 관리 구조는 권한의 배분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의한다.

집행기관과 대표기관 및 의사결정기관과 감사기관에 의한 자율관리 체계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집행기관과 의사결정기관과의 관계, 감사기관과 의사결정기관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① 집행기관 주도형

이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기관장이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의장을 겸하는 경우이다. 대다수의 공공법인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³⁴⁾

이 유형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감독권이 강하며, 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를 주무부처의 감독권으로 균형을 맞추는 유형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와 공익적 법인의 경우에 따라 그 공공법인의 자율성 보장에 차이가 있고, 대표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에도 당

32) 여기에는 특수법인인 각종 전문자격인 협회(변호사회,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조합(농협, 수협, 신협 등) 기타 사단법인(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등)이 해당되며, 설립허가주의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있다.

33)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34) 국립환경공단의 경우, 이사장은 임원으로서는 공단을 대표하고(자연공원법 제51조 제1항), 이사회의 의장이다(자연공원법 제57조제2항 참조).

연히 차이가 있게 된다.

② 의사결정기관 주도형

이 경우는 대표기관 및 집행기관과 분리된 의사결정기관을 가지는 경우로서 항만공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항만위원회가 이사회를 기능을 하며, 항만위원회의 위원에는 항만공사의 임원(즉, 사장, 3인의 본부장, 감사)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이 없다(항만공사법 제10조 이하 참조).

출연연법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유일한 이사이므로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집행기관이 동일한 특수한 형태로 되어 있다(출연연법 제11조제2항). 이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관을 연구회라는 별도의 지도·관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분리시킨 경우이다.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은 이들 연구회와 연구기관을 동일한 소관기관으로 규정하여 주무관청인 국무총리(국무조정실)가 이들 연구회와 연구기관을 함께 감독하는 중층적 관리·감독체계에 있다.

③ 내부감사형과 외부감사형

이 분류는 감사기관의 지위와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른 구분에 해당한다.

감사기관이 형식적인 내부감사와 실질적인 외부감사로 운영되는 경우와, 실질적인 내부감사와 주무관청의 감사권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대별할 수가 있다.

이는 주무관청의 감사, 감사원의 감사,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내지 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병행하는가 여부와도 관계된다.

외부회계감사의 경우에도 내부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다르게 된다. 출연연법에 의한 정부출연연

구기관은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연구회가 지정한 회계사(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는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활용된다.

한편, 임원으로서 감사를 두는 경우와 감사 대신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감사기관과 의사결정기관이 일체화되어 강력한 대표·집행기관에 견제를 행하려는 것이며, 이와 상응한 이사의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이사회와 이사의 기능과 이사의 역할 및 책임을 어느 정도로 강화·확대할 것인가에 따라 이른 바 공공법인의 지배구조가 다르게 되며, 이에 따라 전체 법인의 조직, 운영 및 관리·감독을 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2) 운영·지배 구조

① 불특정 이해당사자모델

법인의 지배구조를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이해당사자모델(stakeholder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인을 자본참가자인 주주로 보고, 그 경영을 소유로부터 분리하는 법인에서의 지배구조는 주인이 전문경영자를 감독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주주모델(shareholder model)이라고 부른다.

공공법인 중 비영리법인에는 주주와 같은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주주가 없고 또한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³⁵⁾.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의 경우에 분명히 물적 자산을 출연한 사람 또는 기관이 있으나, 이들은 법적으로 소유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35) 황창순, “한국 공익법인의 성격과 기능: 기업재단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18권 제2호(1998), 148면.

공익법인은 면세와 기타 영리조직과는 다른 특혜를 받는 대신에, 일단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공익목적으로 사회에 기부된 것으로 보며 더 이상 재산권의 행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이 없다는 것이며, 주식회사와 비교한다면 이해당사자모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란 법인이 설립된 목적에 합당한 활동을 하는가를 감독하고 이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조정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핵심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의 핵심은 공익목적의 달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② 실정법상 공공법인의 경영구조

공공법인의 경영은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기관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지 아니하나 의사결정기관, 업무집행기관, 감독기관의 3종류가 있고, 이에는 법률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과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 있다.

민법 및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공공법인에 관한 규정은 영리법인 주식회사에 비하여 간단하다.

(a) 의사결정기관

사단법인은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므로, 사단법인의 대내적·대외적 활동은 사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전사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Mitgliederversammlung)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고 법인의 최고 의사는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사원총회는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을 비롯하여, 사단법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며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 광범위한 때에는 사원총회는 실질적으로 강력한 기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위임사항이 별로 없는 때에는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법인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것이다.³⁶⁾

(b) 업무집행기관

a) 이 사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를 불문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든 공익법인이든 특수법인이든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법인이든 관계없이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즉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이사 이외에 사원총회나 기타 기관이 대표할 수 없다.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민법 제40조 제5호, 제43조),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법인은 공운법 제25조이하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고, 출연연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은 출연연법 제12조 및 제23조에 그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³⁷⁾

36) 공공법인은 대부분 재단법인의 본질을 가지므로 사원총회의 개념은 없다. 공기업의 경우 정부 출자·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있게 된다.

37) 모든 특수법인이 설립근거법률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는 것은 아니다.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관에 위임한 경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⁸⁾.

이사의 정수는 공운법의 경우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이하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예외적인 경우³⁹⁾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저한에 대한 제한이 없고 1인 또는 수인이라도 무방하다(민법 제57조, 제58조 제2항, 공운법 제18조제1항).

공익법인의 경우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의 원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증감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1항).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모든 업무집행을 처리할 수 있으나,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간에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은 원칙적으로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하여 이사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업무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8조 제2항). 그러나 집행하여야 할 업무의 성질이나 이사 원수의 다소 등의 사정으로 때로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때로는 이사 과반수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의 대표권이란 이사의 직무권한 중 대외적인 관계에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공공법인의 이사는 대표이사인 기관장이 대표권을 가지며, 다른 이사는 법인의 대표권이 제한된다. 반면

우도 없지 않다.

38)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8, 245면.

39) 15인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나 출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제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단서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다.
3.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에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은 단독대표를 원칙으로 하므로(민법 제59조 제1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이사 각자에게 대표권이 귀속된다.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에게 공동대표권을 부여한 경우라도 수동대표권은 이사 각자에게 있다(상법 제208조 제2항).

이사의 대표권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법 및 공운법 등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법인대표도 법인의 사무집행에 다름 아니므로 대표권의 범위는 법인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특정의 행위가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인가는 거래의 안전 보호의 입장에서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며, 법인의 목적도 정관에 목적으로서 기재된 개개의 행위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부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⁰).

b) 이사회

(가) 총 설

각 이사가 별개로 법인의 업무집행을 한다는 민법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특수법인으로 구성되는 공운법상의 공공법인은 실제로는 법률 및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인 이사회를 설치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하며, 이사는 이사회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사 중에서 특정한 자를 선출하여 그로

40)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하여금 이사장 또는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도록 하는 조직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민법이 예상하는 이사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사회는 민법상 필요기관이 아니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이지만⁴¹⁾, 이른바 공공법인, 공익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를 두어야 하므로(공운법 제17조, 공익법인법 제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항) 이런 경우에 이사회는 법률상의 회의체라 할 것이다⁴²⁾.

(나) 이사회의 소집

공공법인의 이사회는 이사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을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적지 않다. 따라서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피하게 된다.

i) 결의방식

민법상 이사제도는 회의체로서의 이사회를 예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서면결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방식에 관하여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예외이다.

이사회의 결의방식과 관련하여 공운법상 공공법인의 이사회 결의는 출석이사회를 원칙으로 하되,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을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운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

41) 김상용, 앞의 책, 250면.

42) 최기원, 민법주해 [I] 총칙, (박영사, 1992), 667면.

공익법인에 있어서는 이사회 결의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 공익법인에 있어서는 반드시 회의를 열어 결의를 하여야 한다.

ii) 소집절차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전부의 이사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충분히 밝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모든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의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 있고⁴³⁾, 또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들에 대한 소집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 이러한 이사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어도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가 당연무효라는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⁴⁴⁾.

그러나 정관에 규정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사 전원이 이사회 개최에 동의하여 이사회를 열어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는 유효하다고 본다(상법 제390조 제3항 참조).

이사회 소집절차에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예컨대 사전통지기간의 부족)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도 결의는 유효하다

43)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4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

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i) 소집권자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 개개인이지만, 정관에서 소집권자를 정한 경우 그 소집권자의 소집에 의하지 아니한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의료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⁴⁵⁾.

iv) 소집방법

이사회의 소집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지하면 되고, 회의일 일정기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상적인 절차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이사에게는 통지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소집권자의 소집기피 등에 관하여 공운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재적이사 과반수 및 감사의 이사회 소집요구권과 소집권자의 권위나 소집기피시 감독청의 승인에 의한 소집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공익법인법 제8조 제2항, 제4항).

45)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다) 이사회 의사결정

공공법인 및 공익법인의 경우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익법인 제9조 제1항), 사립학교법인의 경우도 위와 같다(사립학교법 제18조).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가 결의에 참여하여도 그것이 유효한표결권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를 제외하여도 결의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정관에 의하여 설치되는 임의기관으로서 민법에는 이사회 결의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체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이사는 법인과의 위임 유사의 계약에 의하여 취임한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1조), 그러한 의무와 상응되지 않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본다(공운법 제19조제3항, 공익법인법 제7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⁴⁶⁾ 예를 들면 이사에 대한 법인재산의 양도, 임대의 승인 등이다.

(라) 이사회 결의사항

공공법인 또는 공익법인은 법적기관이므로 이사회결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임의기관이므로 아무런 법적 권한은 없고 다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이 정하여진다.

46) 이 경우, 제척되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재적 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공운법은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19조제3항).

공운법상 공공기관 이사회는 ①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②예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③결산, ④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⑤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⑥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⑦잉여금의 처분, ⑧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⑨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⑩정관의 변경, ⑪내규위 제정과 변경, ⑫임원의 보수, 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⑭그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동법 제17조제1항)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①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⑥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공익법인 제7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마) 이사회결의의 하자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그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고 또한 이사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위법하기 때문에 결의가 무효인 경우, 그 결의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법인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사회는 민법상 법인의 임의 기관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일반원칙상 이해관계인은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언제든지 소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실무상으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이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승소판결에 대하여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⁴⁷⁾. 한편 이사회결의취소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c) 감독기관

공공기관의 감사는 공기업은 대통령이,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며, 1인으로 상정하고 있다(공운법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시장형 공기업에는 감사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공운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한편, 이른바 공익법인 또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익법인법 제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 이 경우 감사는 필요기관이라 할 것이다(공인법인법 제3조 제1항 제6호, 제10조).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민법 제66조). 즉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다. 이는 감사가 필요적 상설기관인 주식회사의 경우(상법 제409조 제1항)와 다르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포괄적인 대표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관인 감사를 임의기관으로 둔 이유는 민법상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통해 법인의 업무상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⁴⁸⁾. 그러나 실제로는 감사를 두지 않는 법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감독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⁴⁹⁾.

48)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646판결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재단이사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마찬가지로의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재단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49) 주기동, 주석민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735면.

< 비영리법인의 기관구성 비교 >

법률 \ 기관의 종류	정관 변경기관	업무집행결정기관		감독기관	비 고
		업무집행기관	대표기관		
민법 (사단법인)	사원총회	이사(필요상설기관)		1인 또는 수인감사(임의기관)	이사회(임의기관)
		이사	이사		
민법 (재단법인)	정관에 정함	상 동		상 동	상 동
공익법인법	이사회	이사회 (5인이상 15인 이하의 이사)		2인 이상의 감사 (필수기관)	주무관청의 감사 민법의 특별법
		이사회	정관결정 사항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회(7인 이상의 이사)		2인 이상의 감사 (필수기관)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여야 한다
		이사장	이사장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정함	이사회 (5인 이상의 이사)		2인 이상의 감사 (필수기관)	민법과 공익법인법의 특별법
		이사회	대표이사		

③ 소 결

법인의 운영체제와 지배구조는 결국에는 조직이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법인·단체의 목표 달성과 효과는 일차적으로 경영기관의 몫이다. 따라서 좁게 보면 지배구조란 법인의 경영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⁵⁰⁾.

50) 강희갑,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미국법상의 경영관리구조”, 『경영법률』 제9집(한국경영법률학회, 1999), 127~150면 ; 동, “우리 나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및 감독구조의 현황”, 『비교사법』 제6권 1호(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413~425면 ; 동, “미국법상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7권 2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12) 675~680면 ; 박세화, “미국의 회사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최근 동향(이사회제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림법학 FORUM(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0권(2001), 229~250면 ; 강희갑, “미국의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20권 4호(2002), 43~82면 ; 이영철, “영미 보통법상 회계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비교사법』 제8권 2호(2001, 12), 106~109면 ; 엄해운, “블루리본보고서와 최근의 미국 감사위원회”, 『상사법연구』 제21권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두고 있으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 대표이사의 선출권, 대표이사와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등을 갖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최고경영기관이다(상법 제389,393조).

상법이 이사회에게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사회의 주된 임무는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주된 지위는 경영기관이고,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부차적인 것이다.

한편으로 상법은 이사회 외에 대표이사라고 하는 또 다른 경영기관을 두어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집행하는 임무를 맡기고 있다. 나아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의사결정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여하튼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회사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에 집중시키고 있음은 분명해진다.

1호(2002), 301~33면 ; 감사제도의 개선에 관하여는 강희갑, 앞의 책, 7~254면 ; 임충희, “감사위원회제도의 현상과 과제”, 『상사법연구』 제20권 3호(2001), 299~320면 ; 권중호, “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위원회제도의 과제”, 『상사법연구』 제19권 3호(2001), 99~130면 ; 강대섭,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목포대 법학연구소), 창간호(2001), 31~56면 ; 정찬형,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상장협 연구보고서 95-4)(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5, 12), 233~262면 ; 강희갑, “미국의 기업 지배구조 및 회계감사에 관한 최근의 개혁입법”, 『상사법연구』 제21권 제4호(한국상사법학회, 2003, 2), 215~247면 ; 사외이사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정찬형, 앞의 논문집, 현대상사법논문집(2001), 36~40면 ; 동. “사외이사제도”, 『고시계』(2001, 12), 49~67면 ; 이형규,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세기 한국상사법의 진로』(우흥구박사 정년 논문집, 2002), 223~240면 ; 상희갑,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경영감독기능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9권 2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8), 225~283면 ; 이형규·이상복,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상장협연구보고서, 2002-3), 2002, 5 ; 안택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21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2002), 245~287면 ; 김용구,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0집(한국기업법학회, 2002), 347~372면 ; 김영곤,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기업법연구』 제8집(한국기업법학회, 2001), 397~418면 참조.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이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법상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수기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수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경영자에 대한 견제의 측면이라는 점에서도 쉽게 예단할 수 있다.

비록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가 임의적 기관이지만, 일단 이사회가 구성되면, 공익법인에서와 같은 필수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그 기능은 차이가 없다. 또한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을 제외한 모든 비영리법인에서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권한사항 내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핵심적 경영기구는 이사회인 것이다.

이사회는 성질상 회의체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할 경영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이사장 내지 사장 등의 경영자의 선임이다. 경영자는 비영리법인의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에 조정과 균형을 도모하면서 경영성과를 올리는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책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이사회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다.

두 번째는 조직의 존재이유를 점검하고 또한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조직의 설립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며 공익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역할을 포함된다.

세 번째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는 일을 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사업의 결과를 점검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 감사를 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네 번째는 자원을 동원하는 일이다. 특히 자금을 조달하거나 모금을 하는 일이 이사회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제 1 절 국립대학법인법 관련 개선방안

1. 국립대학법인법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근(2007.3.9) 입법예고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조직의 하나인 국립대학을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켜 국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와는 동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으로 최근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시행령이 제정·공포(2007.4.6 법률 제8331호)된 바 있다.

전자의 특별법안은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기관을 특별법으로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새로 신설하는 것과 달리 법적 규율을 달리할 뿐, 기존의 인적, 물적 자산은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후자의 제정 법률은 신설되는 국립대학을 법인격이 있는 국가출연의 법인대학으로 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기본법 및 대학설치령,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과 구분되는 학교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학교는 교육사업(인가사업)의 사업시설물과 운영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동 특별법안은 학교법인과 학교(교육사업체)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편, 정부조직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여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하에서는 동 특별법안의 내용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핀다.⁵¹⁾

51) 입법과정으로 본다면, 먼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먼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의원입법으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법안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현행 국립대학교 전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1) 쟁점의 정리

1) 제명 및 용어의 정리

① 제 명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공립대학의 학교법인”으로 함이 타당
- 입법예고안(이하 “법안”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둔 취지나, 제9조 제1항 중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취지 및 이 법안의 입법취지에 담긴 국·공립대학정책의 전환 등을 고려할 때, 공립대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법령은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는 오로지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⁵²⁾, 법령용어체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도 법안의 “○○대학법인”보다는 “학교법인”으로 사용함이 타당
- 법률제명에 “○○특별법”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근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임.

⇒ “국·공립대학의 학교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또는 “국·공립대학법인화법”으로 제명 변경 고려

② 적용범위

- 국립학교가 아닌 「국·공립대학의 학교법인」 및 「동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

하고 있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52) 고등교육법 제 3조, 사립학교법 제3조 등 참조.

- 법안 제3조(적용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하여 국가가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 『고등교육법』 제3조는 학교의 구분으로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법안의 규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운영방식이 전환되지 아니하는 현행 □□국립대학 등』을 의미함.
- 『사립학교법』의 경우처럼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함에 필요한 사항 및 이에 대한 감독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어야 함이 타당함.

⇒ 본조 삭제

③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고등교육법과의 관계

- 당연히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법리와 법체계에 맞음
- 법안의 ‘국립대학법인’이 설립하는 국·공립학교는 해석상 고등교육법상 사립학교에 해당하므로 고등교육법과 모순이 없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학교= 사립학교: 동법 제3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인 바, 법안에 따라 이른바 설립주체가 전환되는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당연히 동 규정에 의하여 조직되었고, 향후에도 모든 대학은 동법 제19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교육 조직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에 필요

○ 『사립학교법』과의 관계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에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학교를 “사립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과 동일함

- 따라서 법안은 오히려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인정하여 「사립학교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새로운 유형의 학교’로 법안 및 법안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함.

○ 민법 및 공익법인법과의 관계

- 법안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보충적 의미에 해당하는 일반법으로 「민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함.

④ 용어의 정리

○ 특수법인(제2조제3호, 제3조, 제5조)

- 법령용어로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강학상 지칭하는 개념임

○ 법인의 ‘신설’, ‘설립’, ‘전환’

-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로 설립하지만, 특수법인은 개별 법률(설립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므로 설립허가가 불필요하고, 성립을 위한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그러므로 특수법인인 법안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학교법인’은 “국가가 설립”하거나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⁵³⁾.

○ 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

- 독립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 및 법인에 설치하며,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자

53) 전환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함. 즉, 현행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실체가 바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함.

문을 받는 자에게 소속시키는 바,

- 설립준비위원회는 지휘·감독을 받는 체계는 따로 있을 수가 있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조직에 해당하는 바, 사단법인의 발기인 단체와는 구분되며, 설립되는 법인과도 구분됨.
-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중인 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제반 법적 효력은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는 점에서 “설치”의 용어보다 “구성한다 내지 둔다”로 함이 일반적인 입법례임.
- 오히려 설립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에 관한 부담주체와 지급방법 등이 규정되어야 함.

○ 국립대학법인의 총·학장

- 학교법인의 대표이사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학교의 장에 해당하는 “총장, 학장”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함. 즉, 개념 및 용어상 ‘학교법인의 대표’와 ‘학교(대학)의 장’은 다른 개념임.⁵⁴⁾

○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권리·의무

- 법리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소관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에 관련되는 권리·의무』가 정확한 표현이며,
- 국립 또는 공립대학은 권리능력이 없음.

⑤ 적용범위

○ 국립대학법인의 명칭(법안 제7조)

- 불필요한 규정임.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임.

○ 교직원 등(법안 제12조)

- 고등교육법을 적용하면 충분함.

54) 물론 동일인이 겸할 수는 있으나, 용어상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법례임.

(2) 법 체계 및 조문별 개선방안

1) 대학 관련법 체계

- 학교법인법과 학교법의 혼재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은 i)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ii)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음.
 - 대학설립·운영규정 역시 마찬가지임.
- 학교설립주체와 교육사업(교육시설)의 구분
 - 학교설립주체는 i) 국가(국립학교의 경우), ii) 지방자치단체(공립학교의 경우), iii) 학교법인(사립학교의 경우)⁵⁵⁾
 - 교육사업은 인가사업이며, 사업자는 학교설립주체로 제한되어 있음.
 - 학교설립주체의 사업 중 하나로서 i) 사업조직(학교조직: 학·총장, 단과대학 등), ii) 사업내용(교육: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등), iii) 사업시설(학교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 국가의 경우에는 인가가 불필요(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은 인가가 필요함.
- 규정 내용의 분리
 -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
 - 학교법인의 설립, 조직, 사업, 임원, 재정 및 회계, 기타
 - 학교(교육사업)에 관한 규정
 - 학교의 장, 학칙, 교원, 교육과정, 학교의 운영 등
 -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
 - 교원과 직원의 분리

55) 사회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인(법인이 아닌 개인)도 설립·운영자가 될 수 있음.

- 교원의 임면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직원의 임면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권한사항

* 국·공립대학 교원: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 별도 적용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개정 2004.10.15>)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31, 2004.10.15>

③삭제<1999.1.29>

④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비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⑤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9.1.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89헌마89 1990.10.8 (1990.12.31 법률 제4304호)]

2) 법안의 체계상 문제점

○ 법안은 교원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제12조제3항), 이는 먼저 법안에 의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대학(실질적으로 현행 국공립대학 중 전환되는 대학을 의미)이 사립학교인지, 국공립학교인지, 제4유형의 학교인지 먼저 규정한 연후에 교원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법률을 결정함이 법리와 법체계에 맞음.

- 법안 부칙(제11조)은 국립학교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인이 설립하는 대학으로 전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제정할 필요
 - 법안은 법인에 관한 사항과 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내용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국공립대학에서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함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운영원칙 등에 관한 사항이 불명확
 - 국립대학(전환되지 않는)의 운영원칙을 준용할 것인지, 사립대학의 운영원칙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운영원칙을 마련할 것인지 불명확
 - 전환 전후의 변경되는 제도적 장치와 원칙 등에 대한 사항, 각종 자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등 경과조치가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

(3) 조문별 검토

- 총·학장
 - 이는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할 사항이며, 법안 제16조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님.
 - 이는 학교의 조직에 해당하며, 법인의 조직은 당연직이사로서 법인의 대표(대표이사)로 규정하면 충분함.
 - * 법안 제15조(임원): ①‘.....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
- 제2조(정의)
 - 제3호 “국립대학법인”은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또한 공립대학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제3조(적용범위)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법인전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안의 규정내용으로는 불필요함.
-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하여 국가가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법안에 의하여 현행 국립학교에서 전환되는 제4유형의 학교가 설치·운영되는 것일 뿐임.
- 또한, 국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도 법안의 전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에도 모순됨.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항: 법인에 관한 한, 개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법이므로 당연히 민법 등에 우선하므로 불필요함.
- 제2항: 당연히 법(안)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제19조(학교의 조직)도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용되며, 예외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 법(안)에서 ‘국립대학법인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의 조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체계상 모순이 없게 되고, 규정상 공백이 없게 됨.
 - * 고려사항: 법안에 의하여 전환되는 국공립대학의 조직은 어느 법령등에 근거하는가? 즉,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 중 i) 국립학교의 경우에 해당하는가(대통령령 및 학칙), ii) 공립학교의 경우(조례 및 학칙)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iii) 사립학교의 경우(정관 및 학칙)에 해당하는가?
 - * 기타 교육공무원법 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제5조(법인격 등)

- 제1항: “특수법인”은 “법인”으로 수정을 요함.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 제2항: 법인의 성립 이전에 법인이 동 법안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은 어떤 국공립대학인지 먼저 법정되어야 함. 즉, 별표로 동 법안에 의하여 당연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의 명칭과 관련 대학을 현행 국·공립대학과 연계시켜 전환되는 관계를 반드시 표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로 설립되는 법인이 아니라 개별법(민법의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의 제정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구체적 명칭을 규정하여야 함.
- * 참고 입법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본 「국립대학법인법」

○ 제6조(정관)

- 제1항: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참조
 - * 교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사항(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제7조(국립대학법인의 명칭)

-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과 관리·운영체계가 전환되는 국·공립대학의 명칭을 별표로 특정하여야 할 것임.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최근 법제처 입안심사기준에서는 규제사항으로 하여 법안에서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제9조(국립대학법인의 신설 및 전환)

- 제1항: 법리상 모순이며, 법안의 취지와도 모순됨.
 - 국립대학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것이며, 기존 국공립대학의 관리운영체계를 전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
- 제2항: 「대학설립·운영규정」과의 관계 규정은 불필요

- 이 법안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및 이로 인한 기존 국공립대학의 관리운영체계의 전환에 관한 법률이므로 경과조치로 기존 국공립대학과의 전환 전후관계를 규정하면 충분하고, 향후 대학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을 법률 개정으로 당연설립하고, 학교의 설립·운영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임.
- 제3항: 국공립대학의 관리운영체계의 전환 절차에 관한 규정임.
 - 제1안: 법정 전환방식(위 제2항 설명 참조)
 - 제2안: 관할청 승인방식(법안 제3항)
 - * 제2안의 문제점
 - 학교의 설립 주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학교설립인가가 면제된 법정 설립학교(국립학교, 공립학교)를 국립대학법인이 설립하는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고, 학교와 관련된 모든 자산과 권리의무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으로 이전·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설립주체가 결정할 사항임.
- 법안의 경우(제9조제3항)는 대학의 장이 결정하되, 관할청이 승인하는 방식이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부적절(권한없는 자가 결정하는 것임)함. 대학의 장은 운영자이므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학교시설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됨.
- 법인의 설립을 학교의 장이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10조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설립준비위원회(제10조)를 설치하여 법인설립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과는 모순됨.
 - 제2안의 경우, 전환대학의 결정기준, 결정절차와 방식. 결정권자 등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할 것

임(국공립대학으로 남는 경우와 전환되는 경우의 결정기준과 절차 등).

○ 제10조(설립준비위원회)

- 부칙에서 규정할 사항임

* 참고입법례: 출연연법 부칙, 서울대학교병원설치령 부칙 제2조 (설립준비).

○ 제11조(설립절차)

- 부칙의 경과조치사항에 해당함.

- 최초 정관의 작성(제1항 관련)
- 현 총·학장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제2항 전단 관련)
- 최초 임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2항 후단 관련)

- 설립준비위원회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제1항, 제5항 내지 제7항)은 부칙의 설립준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할 사항임.

○ 제12조(교직원 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으로 충분

· 고등교육법을 적용하므로 제12조는 불필요한 규정임.

-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 경우(제3항)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법안 제2항에 의할 경우)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함.

*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사항이지만, 법안 제2항은 단순히 정관사항으로 위임하고 있음.

○ 제13조(민법의 준용)

- 학교법인이므로 사립학교법을 준용할 것인지, 공익법인법을 준용할 것인지, 민법의 재단법인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재검토되어야 함.

* 제12조제3항은 교원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

- *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 중 학교법인에 적용할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별로 없음.

○ 제15조(임원)

- 법인의 임원에 관한 규정으므로 일반적인 모범례에 따라 규정함이 타당하며, 동조는 임면·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1항: “총·학장”은 불필요, 감사의 자격도 임원의 선임 관련 규정에서 정할 사항임.
- 제2항: 각각 해당되는 규정(총·학장의 직무, 감사의 직무)에서 정할 사항임.
- 제3항: 이사장에 관한 규정에서 정할 사항이며, 이사회 구성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거나 이사장의 선임(임면)규정에서 정함.
 - * 총·학장은 일단 먼저 ‘학교의 장’으로서 임명하고, 당연직 이사 내지 당연직 대표이사로 하는 순서에 있기 때문임(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법인사무와 학교사무를 구분하고, 법인의 사무 집행권과 학교의 업무집행권을 구분하는 체계에 있음).

○ 제16조(총·학장)

- 제1항: 법안 제4조에서 고등교육법을 준용하므로 동일한 내용은 따로 둘 필요가 없음.
- 제2항: 임원의 직무에서 규정할 사항이며, 선임절차 등과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함이 타당함.
- 제3항 이하: 임원의 선임(임면) 조항 또는 임원의 겸직금지조항에서 규정할 사항임.
 - * 유사입법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7조, 사립학교법 제23조
 -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은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내지 학장을 의미하며, 이는 학교법인의 대표와는 별개의 개념임(물론

총·학장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되는 것도 가능함).

- * 사립학교법의 경우, 학교법인의 대표는 이사장(동법 제19조제1항)이며, 학교의 장의 임무는 고등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무의 통할, 소속 교직원 감독 등임”

○ 제17조(이사)

- 임원의 선임 관련 규정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
- 제1항: 당연직 이사에 대한 규정방식으로는 부적절함.
- 제2항: 당연직 이사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지만, 당연직 이사로 특정될 수 없는 경우(제4호 및 제5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함.
 - “추천”보다는 “지명”하는 자로(제2호 내지 제5호)
 - “광역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하위 조직 내지 관할하는 법인·단체의 이사를 겸할 수가 없음(제4호).
 - “총동창회대표”와 “총동창회대표가 추천하는 자”의 대등성 내지 대체성이 인정되기에는 추천하는 자의 범위 내지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법리상 법문상 특정되도록 하고, 선택형으로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 『총동창회대표』로 하거나 『총동창회의 임원 중 총동창회대표가 지명하는 자』로 하는 것이 당연직 이사는 직책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부합하게 됨.
 -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제8호) 및 “기타외부 인사”(제9호)는 당연직 이사가 될 수가 없고, 이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수는 있음. 그러나 제1항의 규정과 관계가 모호하므로 수정되어야 함(이사의 자격요건).

- 제3항(이사의 임기):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로 정하든 아니면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고, 사립학교법의 경우를 참조하면 3년으로 함이 타당함.
- * 일반적으로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 또는 2년이나, 3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제18조(이사회)

- 제1항: 이사회의 설치 조항이므로 표현을 수정함이 타당
- 제2항: 제1항과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
- 제3항: 이사장을 임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원조항에서 이사장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함. 따라서 제3항은 편재 이동이 필요
- 제4항 이하: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조문으로 함이 바람직함.
- * 제6항: 제척사유를 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의 규정을 이사장 및 이사에 준용하는 문제임(참조: 사립학교법 제27조). 의결권에 관한 제척사유는 이사회의 운영(議事)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관으로 정하거나 관련 규정으로 하여도 충분한 사항임.
- * 제7항: 정관 또는 법인 내부 규정(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사항임.

○ 제19조(이사회회의 소집)

- 이는 정관 내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사항임.

○ 제20조(이사회회의 기능)

- 이는 이사회의 설치규정(제18조)의 제2항으로 규정할 사항임.
- 제1호: 제16조제3항과 관련하여 볼 때, “선임”으로 볼 수가 있는 지는 의문임(*후보자의 선정에 해당).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 제2호: 이사회가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가 있는지는 의문임.
 - * 법안은 임원의 해임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입법의 흠결).
- 제3호: 「임원의 인사·보수」와 「교직원의 인사·보수」는 동일한 성격의 규정사항으로 볼 수가 없으며, 「임원의 인사」는 제1호 내지 제2호와 중복됨.
 - * 임직원의 보수를 매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것인지, 보수규정에 의하고 차년도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증감여부 및 증감폭을 인건비 항목 심의에서 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 의결사항이 다르게 됨.
- 제5호: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정하기가 곤란함.
- 제8호 내지 제9호: 당연의결사항이므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이사회결사항이 되어야 함에도 흠결
- 대학운영계획 및 경영성과목표(제36조), 부설학교의 설치(제37조) 등도 이사회결사항으로 보여짐.

제 2 절 공운법 적용 공공기관 관련 법령 개선방안

1. 적용법률의 우선순위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법의 우선 적용(법 제2조제2항)

-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공공기관법”이라 약칭함)을 적용

- 공공기관법에 규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설립(설치)법을 적용
- 이들 모두에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설립법(설치법)상의 다른 법률의 준용규정을 적용
- 공공기관법의 허용범위 내에 있는 공공기관설립법 규정
 - 공공기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봄.
예: 임원의 수와 종류: 15인 이내 임원을 다양하게 규정하는 경우
- 공공기관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공공기관설립법 규정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
 - 다만, 공공기관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예, 제주 특별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설립법 규정)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
- 공공기관법에서 우선적용을 허용한 다른 법률
 - 다른 법률(개별 공공기관설립법 포함)의 규정이 우선 적용
 - ※ 공공기관법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법 제2조제2항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법 제11조제3항 관련)
 -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 그 법률의 규정(법 제18조제4항)
 - 감사위원회의 설치(법 제20조제3항)
 - 국가재정법(법 제23조제2항: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심의기구의 설치 예외(법 제23조제1항)
 -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추천위원회(법 제26조제2항 단서)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절차(법 제26조제3항 단서)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지정된 해의 보수: 법 제33조 제3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안 의결절차(법 제40조제3항 단서: 사원총회,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경우)
- 경영실적평가 제외(법 제48조제2항: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의 평가결과 활용)
- 병행적용(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내용과 범위: 법 제51조)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법 제52조)

※ 준용규정

- 경영공시 열람 및 복사 비용의 부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준용
- 증권거래법 제11조의13 및 제191조의 14(법 제54조) 준용

(2) 기타 공공기관

○ 공공기관법의 적용범위

-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 특히 구체적으로는 제3장의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제11조 내지 제15조)에 관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밖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설립법 등에 따라 규율
- 경영공시(제11조), 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조사(제13조), 공공기관의 혁신(제15조)가 적용됨.
- 따라서 공공기관법의 적용 관련 정비사항이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잠재적 사항으로 됨(*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법령정비가 문제된다는 점은 입법당시 내재된 한계임).

2. 정비사항 및 모델 정비방안

(1) 적용법률의 개정 반영 정비

○ 종전 적용법률에서 공공기관법으로 정비

현 행	정 비 안
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u>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u> 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에 따른다.

(2) 개별 관련 규정의 정비

1) 임원 임면 관련 규정

○ 정비방향

-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임면 및 사원총회가 있는 기관의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개별법률에는 두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 임원의 종류(구성) 및 수에 관한 규정만을 둬(단, 비상임이사의 법정 비율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원의 종류 및 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공공기관법에 맞도록 수정함)
- 다만,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임면규정으로 정비함.

○ 모델 정비방안 I (사원총회가 없는 경우)

현 행	정 비 안
<p>제 8 조(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 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3 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 을 둔다.</p> <p>②사장과 감사는 문화관광부장 관이 임명한다.</p> <p>③전무이사와 상임이사 및 비상 임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 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야 하다.</p>	<p>제 8 조(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 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3 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p> <p>< 현행 ②~③(삭제) ></p> <p>②공사 임원의 임면은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 참고안의 경우, 각 관련 개별조항마다 공공기관법 적용조항을 두
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음.

○ 모델 정비방안 II(사원총회가 있는 경우)

현 행	정 비 안
<p>제35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p> <p>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p>	<p>제 8 조(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 사 3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p> <p>< 현행 ②~④(삭제) ></p>

<p>분한다.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p> <p>③공사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p> <p>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②공사 임원의 임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	--

※ 공공기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특례임.

※ 임기규정이 동일 조에 규정된 경우에도 삭제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르도록 함.

【 참조: 유형별 검토 및 정비안 】

<유형1> 임원에 관한 사항을 타법(관리법) 적용하는 유형

○ 한국전력공사법 유형

현 행	정 비 안
<p>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u>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u>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p>	<p>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다.</p>

※ 이 경우, 공공기관법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비안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주의적 규정에 해당된다.

<유형2> 공공기관법보다 더 상세한(복잡한) 다중 절차를 두고 있는 유형

○ 항만공사법 유형: 추천, 협의, 제청 절차를 둔 경우

⇒ 최종 임면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현행 특수성 인정, 유지(공공기관법상의 임원추천위원회에 갈음하는 위원회를 인정)

현 행	정 비 안
<p>제10조(임원의 임면 등) ①공사에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p> <p>②사장은 <u>위원회가 추천하는 자</u> 중에서 <u>해양수산부 장관이 당해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제청한 자</u>를 대통령이 임면한다.</p> <p>③감사는 <u>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u> 임면한다.</p> <p>④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u>사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면한다</u>.</p> <p>⑤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u>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p>제10조(임원의 임면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u>기획예산처 장관이 당해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제청한 자</u>를 대통령이 임면한다.</p> <p>③<u>그 밖의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u>.</p> <p>④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 임면권자의 임명□□ 절차에 갈음하는 특수한 절차를 허용하는 경우임.

<유형3> 임원의 종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밖의 사항은 『다른 법률의 준용』 조항으로 해결하는 유형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유형: 임원의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 임명권자 및 절차는 공공기관법과 상충됨.
- ⇒ 상충되는 규정은 삭제, 공공기관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준용 규정으로 해결
- ※ 이 경우, 설립법의 조문구성 체계가 제8조 정비안처럼 영성해지는 문제가 있음.

현 행	정 비 안
제 7 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정 비 안
제 8 조(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과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전무이사와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야 하다.	제 8 조(임원)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현행 ①과 같음) ②(삭제) ③(삭제)

2) 임원의 임기 관련 규정

○ 정비방향

- 공공기관법이 제28조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기관장의 임기와 이사·감사의 임기를 달리하고 있음은 물론 연임의 임기에 관하여도 현행 개별 공공기관설립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공공기관설립법에서의 임기조항은 삭제함(따라서 자동으로 공공기관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법 제28조가 적용됨)

※ 이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법령상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정관」개정으로 달리 정하거나 그대로 정관으로 정하면 될 것임.

○ 모델 정비방안

현 행	정 비 안
제 9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 삭제 >

3) 이사회 구성 관련 규정

○ 정비방향

- 이사회 정수(임원의 정수), 선임비상임이사의 신설, 기관장의 이사회 의장 겸임금지규정의 준치 문제에 대하여,
-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정 및 기관장의 이사회겸임금지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 선임비상임이사규정 및 이사회 의장 규정은 따로 두지 아니하고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함(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와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와 동일함)

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이 다르기 때문임).

-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사회가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법의 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개별법률을 개정함.

○ 모델 정비방안 I (이사회 의결사항을 생략하는 유형)

현 행	정 비 안
<p>제32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되,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p> <p>②(생략)</p> <p>③다음의 사항은 이사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결산 3. 정관의 변경 4. 부동산의 처분 5. 규정의 제정 및 변경 6. 자금의 차입 7. 기타 농림부장관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p>④이사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⑧(생략)</p>	<p>제32조(이사회) ①공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p> <p>②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p> <p>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 한국마사회법

* 공공기관법과 중복규정은 삭제함.

○ 모델 정비방안Ⅱ(이사회 의결사항을 보완하는 유형)

현 행	정 비 안
<p>제32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되,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p> <p>②(생략)</p> <p>③다음의 사항은 이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결산 3. 정관의 변경 4. 부동산의 처분 5. 규정의 제정 및 변경 6. 자금의 차입 7. 기타 농림부장관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p>④이사회는 <u>구성원 과반수의 찬성</u>으로 의결한다.</p> <p>⑤~⑧(생략)</p>	<p>제32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③다음의 사항은 이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상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경마장입장료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의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p>④이사회는 <u>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u>으로 의결한다.</p> <p>⑤~⑧(생략)</p>

※ 이사회 의결사항을 공공기관법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함.

4) 지도·감독 관련 규정

○ 정비방향

- 감독규정이 열거식으로 규정되어 있든, 추상적 규정으로 되어 있든 관계없이 특별히 상충되는 바가 없으므로 현행규정대로 유지하고, 해석론에 따라 공공기관법을 적용함.
 - 공공기관법 제51조의 규정에서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특별히 정비할 실익이 없음.
 - 주무기관의 장이 특별히 감독할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함.
- ※ 공공기관법을 준용한다는 표현으로 개별 법률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기관법 제51조의 규정과 순환입법으로 됨.

○ 모델 정비방안(개별 설립근거법에서 특별감독사항을 따로 정하는 경우)

현 행	정 비 안
<p><u>제15조(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사의업무를 지도·감독한다.</u></p>	<p><u>제15조(감독)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지도·감독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u> 2. <u>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u> 3. <u>석탄 및 그 부산물과 석탁가 공제품의 매입·판매 및 수출입</u> 4. <u>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훈련</u>

	<p>5. <u>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u></p> <p>6. <u>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u></p> <p>7. <u>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u></p>
--	---

5) 결산(예산회계) 관련 규정

○ 정비방향

- 예산편성 관련 주주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현행 유지(법 제40조제3항)
-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함(법 제40조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결산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 확정 관련 공공기관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정비
- 관련사항: 회계감사의무, 결산확정 및 이를 위한 서류첨부

○ 모델 입법정비안

현 행	정 비 안
제20조(예산·결산의 승인)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예산·결산의 승인) ①공사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②공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 지체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를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p>
--	---

-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참조(준시장형 공기업)
- ※ 정비안 제2항: 공공기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하여 개별법률(또는 정관)에서 그 회계감사의 방식을 특정한 것임.
- ※ 그 밖의 결산서 첨부서류, 사원총회에서 결산 의결·확정 등에 관하여는 개별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름.

6) 기 타

① 정관 기재사항

○ 정비방향

- 공공기관법과 개별 설립근거법률의 정관 기재사항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관의 기재사항 관련 공공기관법을 우선 적용하며, 이에 따라 정관변경으로 정관을 법률과 동일하게 일치시킴.

○ 모델 입법정비안

현 행	정 비 안
<p>제 6 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 6 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경우에는 개별 설립법률에 대한 보충적 법률의 성격을 가졌으나, 공공기관법은 개별 설립법률에 우선하는 법률이므로 불필요함.

○ 모델 입법정비안

현 행	정 비 안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 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삭제>

※ 한국철도공사법 참조

현 행	정 비 안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현행 과 같음>

※ 다음의 정비안은 공공기관법이 우선법률임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된 정비안임.

“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정비시 고려사항

(1) 예외적 허용 규정의 증가와 관련 법률의 개정

공공기관법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련 개별 공공기관설립법 및 공공기관법의 예외허용규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공공기관법이 일반법이 되고, 개별 공공기관설립법이 특별법이 되는 형태가 된다. 물론 공공기관법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 법률이라는 점은 계속 유지되므로 동시 개정이 필요하다.

(2) 상충규정 삭제 및 일부 조항 유지시 입법학적 문제

하나의 條(조)에서는 필요충분한 사항을 본문·단서, 수개의 항 등의 형식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의 위임입법과 결합하여 완결적 규율체계를 가진다.

공공기관법과 상충되는 개별 법률의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유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별 법조의 형식적 완결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현행 관련 조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4. 공운법 관련 개별법률 정비방안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현 행	개정시안
제47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제47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현 행	개정시안
<p>2. 명칭</p> <p>3. 주된 사무소와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p> <p>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p> <p>5. 이사회에 관한 사항</p> <p>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p> <p>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p> <p>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p> <p>10.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p> <p>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50조 (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상근이사 3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p> <p>②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p> <p>③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당연직 이사는 정관으로 정한다.</p> <p>④임원(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2. 명칭</p> <p>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p> <p>4. 자본금</p> <p>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p> <p>8. 이사회 운영</p> <p>9. 업무와 그 집행</p> <p>10. 회계</p> <p>11. 공고의 방법</p> <p>13. 정관의 변경</p> <p>14.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p> <p>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50조 (임원의 임면) ①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장 1인</p> <p>2. 상임 및 비상임이사 14인 이내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p> <p>3. 감사 1인</p> <p>②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한다.</p> <p>③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비상임이사는(당연히 비상임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p>

현 행	개정시안
<p><신 설></p>	<p>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공단의 임직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④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p> <p>⑤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p> <p>⑥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의4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p> <p>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이어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단의 이사장이 아닌 이어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p> <p>③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시안
<p>제51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삭제 <2005.3.31></p> <p>③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p>	<p>제51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p> <p>②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p> <p>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p> <p>⑤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p> <p>⑥이사장은 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5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p> <p>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제52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p> <p>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p>

현 행	개정시안
<p>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6.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7.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p>	<p>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제5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상근이사·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이사장 및 감사외의 임원과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p>	<p>제5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공단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현 행	개정시안
<p>제56조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p>제57조 (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그 밖의 이사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56조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p>제57조 (이사회) ①공단에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결산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이사회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설치와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7조의2 (선임비상임이사) ①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p>

현 행	개정시안
<p>제58조 (출연) 정부 또는 그 밖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出捐)할 수 있다.</p> <p>제62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62조 (예산의 회계)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공단은 매 회계연년의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 장관,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후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공단은 환경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p> <p>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p>

현 행	개정시안
<p>제63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그 부속서류</p> <p>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p> <p>④환경부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공단의 결산 내용을 기재한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그 밖에 공단의 예산회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내지 45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63조 (경영목표의 수립 및 실적 등의 보고) ①이사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공단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은 이사장에게 경영목표</p>

현 행	개정시안
<p>제64조 (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規程)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68조 (지도·감독) ①환경부 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p>	<p>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공단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 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경영실적보고서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동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⑥그 밖에 경영목표의 수립 및 경영실적 등의 보고, 경영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68조 (지도·감독) ①환경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p> <p>1.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p>

현 행	개정시안
<p><u>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p><u>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u></p> <p><u>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p> <p><u>제69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u></p>	<p><u>권한의 위탁과 관련한 업무에 관한 사항</u></p> <p><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p> <p><u>③그 밖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다.</u></p> <p><u>제69조 (민법 등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u>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 2 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임원의 임기는 제50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u></p>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부)

현 행	개정시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5 조의 2	상충내용이 없음(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인 정관으로 위임)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부)

현 행	개정시안
제 7 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정)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임원) ①공사에 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을 각각 포함한 8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수정) ① 공사에 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을 각각 포함한 9인 이내 이사(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2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그 외의 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	(수정) ②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면권자가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자중에서 사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현 행	개정시안
<p>③감사는 <u>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u></p> <p>④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연임할 수 있다.</p> <p>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u>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u></p> <p>(수정) ③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p> <p>(수정) ④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p> <p>(일부자구수정) ①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p>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환경관리공단법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현 행	개정시안
<p>第 4 條 (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p> <p>1. 目的</p> <p>2. 名稱</p> <p>3. 主된 事務所와 支社·事業所·研究機關에 관한 事項</p> <p>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事項</p> <p>5. 理事會에 관한 事項</p> <p>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事項</p>	<p>제 4 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목적</p> <p>2. 명칭</p> <p>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p> <p>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p> <p>5. 이사회 운영</p> <p>6. 업무와 그 집행</p>

현 행	개정시안
<p>7. <u>削除</u></p> <p>8. <u>財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u></p> <p>9. <u>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u></p> <p>10. <u>公告의 方法에 관한 事項</u></p> <p>11. <u>規約·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事項</u></p> <p>②(생 략)</p> <p>第7條 (任員) 公團에 理事長 1人과 理事 3人 이내 및 監事 1人을 둔다.</p> <p>第8條 (任員의 任命) ①理事長은 環境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p> <p>②理事는 理事長의 추천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任命한다.</p> <p>③監事는 環境部長官이 任命한다.</p> <p>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第10條 (任員의 職務) ①(생 략)</p> <p>②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여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며,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p>	<p>7. <u>회계</u></p> <p>8. <u>공고의 방법</u></p> <p>9. <u>채권의 발행</u></p> <p>10. <u>정관의 변경</u></p> <p>②(현행과 같음)</p> <p>제7조 (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 3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p> <p>②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이사로 한다.</p> <p>제8조 (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다.</p> <p>제9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②임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p> <p>제10조 (임원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p> <p>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처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p> <p>③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p>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현 행	개정시안
<p>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p> <p>③(생략)</p> <p>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p>②·③(생략)</p> <p>第13條 (任·職員의 兼職制限등) ①公團의 任員은 環境部長官의, 職員은 理事長의 承認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p> <p>②(생략)</p> <p>第21條 (豫算과 決算등) ①·②(생략)</p>	<p>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 운영법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 임원(비상임 이사인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 -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21조 (예산과 결산등) ①·②(현행</p>

현 행	개정시안
<p>③公團은 每 會計年度 경과후 3 月이내에 決算書를 作成하여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第23條 (業務의 指導 및 監督등) ①環境部長官은 公團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團에 대하여 그 事業에 관한 指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p> <p>②(생략)</p>	<p>과 같음)</p> <p>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 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p> <p>제23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p> <p>①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 공공기관 운영법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p>②(현행과 같음)</p>

(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고용정책기본법 (한국고용정보원, 노동부)

현 행	개정시안
<p>제3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p> <p>①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p>	<p>제33조 ①~⑤(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시안
<p>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p> <p>②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p> <p>④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고용지원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의 부대사업 5. 그 밖에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p>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p> <p>⑥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신 설></p>	<p>⑥한국고용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p>⑦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현 행	개정시안
<p>⑦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⑧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p>⑨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지도·감독하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⑪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 및 설립등기, 이사회 및 임원, 회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현행 ⑦항과 같음)</p> <p><삭 제></p> <p>(현행과 같음)</p> <p>(수정) 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년도 사업계획·경영목표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매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3. 노동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현행과 같음)</p>

(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노동교육원법 (한국노동교육원, 노동부)

현 행	개정시안
<p>제 7 조 (임원) ①교육원의 임원은 원장 및 사무총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근로자를 대표하는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4인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추천한다.</p> <p>③원장과 감사는 노동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신 설></p> <p>④사무총장은 원장이 선임하되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⑤원장 및 사무총장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수정) ③원장은 노동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p> <p>⑤사무총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⑥원장 및 사무총장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p> <p>⑦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무총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p>

현 행	개정시안
<p><u>⑥원장, 사무총장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는 각각 2년으로 한다. <u>⑧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u> <u>⑨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u></p>
<p><신 설></p>	<p>제 7 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①교육원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p>
<p><신 설></p>	<p>②임원추천위원회는 교육원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p>
<p><신 설></p>	<p>④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교육원 비상임이사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p>
<p>제12조 (이사회)① 교육원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p>	<p>(수정) ① ----- ----- -----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p>

현 행	개정시안
<p><u>에 관한 사항</u></p> <p>3. <u>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u></p> <p>4. <u>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u></p> <p>5. <u>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u></p> <p>6. <u>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u></p> <p>②이사회는 <u>원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u></p> <p>③원장은 <u>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④이사회회의 회의는 <u>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3. <u>결산</u></p> <p>4. <u>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u></p> <p>5. <u>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u></p> <p>6. <u>잉여금의 처분</u></p> <p>7. <u>다른 기관 등에 대한 출자, 출연, 채무보증</u></p> <p>8. <u>정관의 변경</u></p> <p>9. <u>내규의 제정과 변경</u></p> <p>10. <u>임원의 보수</u></p> <p>11. <u>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u></p> <p>12. <u>그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이사회 의장이 된다.</u></p> <p>④----- <u>원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u>이사회회의 안전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그 안전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u></p>

현 행	개정시안
<p>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23조 (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①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p>②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부)

현 행	개정시안
<p>第7條 (任員) ①公團의 任員은 理事長 1人과 常勤理事 3人을 포함한 12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으로 한다.</p> <p>②理事長·常勤理事 및 監事외의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p>	<p>(수정) ①공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사장 1명 나. 상임이사 3명 다. 감사 1명 2. 비상임: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현 행	개정시안
<p>③理事長은 勞動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p> <p>④理事 및 監事는 理事長의 추천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任命한다. 이 경우 非常勤理事는 事業主代表·勤勞者代表 및 産業安全에 관한 專門的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任命하여야 한다.</p> <p>⑤理事長과 理事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p>	<p>②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p> <p>③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④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⑤비상임이사는 사업주대표·근로자대표 및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획예산처나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p> <p>⑦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현 행	개정시안
<p>第12條 (理事會) ①公團에 다음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2. 組織에 관한 사항 3.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에 관한 사항 4. 財産의 취득과 處分에 관한 사항 5. 기타 公團運營에 관한 중요한 사항 	<p>⑧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p> <p>⑨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p> <p>⑩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p> <p>(수정)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에 관한 사항 3.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장기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 계획에 관한 사항 6.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규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현 행	개정시안
<p><u>②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u></p> <p><u>③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u></p> <p><u>④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u></p> <p><u>⑤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u></p> <p><u>⑥理事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u></p>	<p><u>10. 조직에 관한 사항</u></p> <p><u>11.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u></p> <p><u>1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u></p> <p><u>13.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②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③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u></p> <p><u>④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u></p> <p><u>⑤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u></p> <p><u>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⑦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6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u></p> <p><u>⑧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p> <p><u>⑨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p>

현 행	개정시안
<p><신 설></p> <p>第21條 (業務의 指導 및 監督) ① <u>노동부장관은 公團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u></p> <p>② <u>노동부장관은 公團에 대하여 業務·會計 및 財産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公團의 帳簿·書類 기타의 物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u></p> <p>第24條 (民法의 準用) <u>公團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u></p>	<p>제12조의2 (선임비상임이사) ① <u>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u> ② <u>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 ③ <u>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 수행 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수정) 제2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u>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연도별 사업계획·경영목표와 예산편성에 關한 사항</u> 2. <u>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진출에 關한 사항</u> 3. <u>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關한 사항</u> 4. <u>제14조에 따른 무상대여 국유 재산과 물품의 양도·양수·전대(轉貸)·교환이나 담보제공에 關한 사항</u> <p>② <u>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u></p> <p>제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u>공단의 운영에 關하여 이 법에</u></p>

현 행	개정시안
<p>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p>②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

현 행	개정시안
<p>제 7 조 (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과 <u>상근이사</u> 3인을 포함한 <u>19인</u> 이내의 <u>이사</u>와 감사 1인을 둔다.</p> <p>②이사장·<u>상근이사</u> 및 감사외의 임원은 <u>비상근</u>으로 한다.</p> <p>③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당연직이사</u>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근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직업훈련과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전문적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p>	<p>제 7 조 (임원) ①----- -----<u>상임이사</u>-----<u>15명</u> -----.</p> <p>②-----<u>상임이사</u>----- -----<u>비상임</u>-----.</p> <p>③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④이사는 <u>당연직 이사</u>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임명한다.</p> <p>1. <u>상임이사</u>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의 제청으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p> <p>2. <u>비상임이사</u>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p>

현 행	개정시안
<p>⑤감사는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⑥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 8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p><u>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 대표·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평생능력개발과 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u></p> <p>⑤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⑥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p> <p>⑦제6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⑧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p> <p>제 8 조 (임원의 결격사유) -----</p> <p>-----.</p>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현행과 같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

현 행	개정시안
<p><u>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p> <p>6. <u>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p> <p>7. <u>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u></p> <p>제 9 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u>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u></p> <p><신 설></p> <p>②<u>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신 설></p> <p>③<u>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u></p>	<p><u>이 지나지 아니한 자</u></p> <p>제 9 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u>임기 중 공단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u></p> <p>②<u>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u></p> <p>③<u>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④<u>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u></p> <p>⑤<u>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u></p>

현 행	개정시안
<p><u><신 설></u></p> <p>제10조 (<u>비상근임원의 보수제한</u>) 임원중 <u>비상근이사</u>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 (<u>임원의 겸직제한</u>) <u>공단의 임원중 이사장, 상근이사 및 감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u></p> <p>제12조 (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u>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신 설></u></p>	<p><u>회에 제출한다.</u></p> <p>⑥<u>이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p> <p>제10조 (<u>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u>) -----<u>비상임이사</u>----- ----- -----.</p> <p>제11조 (<u>임·직원의 겸직제한</u>) <u>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임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u></p> <p>제12조 (이사회) ① ~ ③(<u>현행과 같음</u>)</p> <p>④<u>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u>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그 안건 의결</u></p>

현 행	개정시안
<p>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2조의2 (사업본부의 설치·운영)</p> <p>①공단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별로 사업본부를 둔다.</p> <p>②사업본부장은 상근이사 또는 해당 사업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p> <p>③사업본부장의 임기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p> <p>④이사장은 매년 사업본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극히 불량한 사업본부장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상근이사인 사업본부장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노</p>	<p>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원 등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12조의2 (사업본부의 설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상임이사----- -----</p> <p>③사업본부장의 임기는 제7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사업본부장”으로 본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인 사업본부장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시안
<p><u>동부장관에게 상근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u></p> <p>⑥노동부장관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u>상근이사를</u> 해임할 수 있다.</p> <p>⑦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수 등의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p> <p>⑧공단에 두는 사업본부의 수와 사업본부별 사업의 범위, 사업본부장의 임면절차 및 평가기준·평가방법 등 사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p>	<p>⑥ ----- ----- <u>---상임이사---</u></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p>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u>제출하고, 그 승인을</u> 얻어야 한다.</p> <p>제22조 (업무의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u>공단을 감독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각 년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u> 2. <u>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정시안
<p>②노동부장관은 <u>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p><u>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u>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u></p>	<p>3. <u>노동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u></p> <p>4. <u>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한 사항</u></p> <p>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 ----- ----- -----.</p> <p><u>제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u></p> <p><u>②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u>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u></p>

(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현 행	개정시안
<p>제47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제 55조에 따른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p>②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p>	<p>제47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제 55조에 따른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12. (현행 제8호~제11호와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제48조 (임원의 임면) ①공단에 이 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 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p> <p>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근으로 한다.</p> <p>③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p>	<p>제48조 (임원의 임면) ①공단에 이 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p> <p>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p> <p>③이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p>

현 행	개정시안
<p><u>따라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에는 이사장의 추천(비상근이사의 2분의 1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한다)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u></p> <p><신 설></p> <p>④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임명해야 한다.</p> <p>⑤감사는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p> <p>제49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p>	<p><u>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동법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3항, 제48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의 해임으로 면직된다.</u></p> <p>④이사장을 제외한 상근이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며, 동법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2항, 제48조 제6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에 해임으로 면직된다.</p> <p>④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⑤감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동법 제35조 제2항 또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해임에 의해 면직된다.</p> <p>제49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p>

현 행	개정시안
<p>제50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p> <p><신 설></p> <p>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는</p>	<p>②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p> <p>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p> <p>제50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p> <p>④이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u></p>

현 행	개정시안
<p>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u>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u> <u>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p> <p>제52조 (임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과 상근이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p> <p>제53조 (이사회) ①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u>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u>③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u></p>	<p>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u>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제52조 (임원의 겸직 제한) ①이사장과 상근이사는 <u>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u> <u>②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비영리 목적의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단 직원이 비영리 목적의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제53조 (이사회) ①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u>②이사장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u>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현 행	개정시안
<p><u>으로 의결한다.</u> <신 설></p> <p>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61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u>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제65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p> <p>②노동부장관은 <u>공단에 대해 업</u></p>	<p>④<u>이사회</u>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3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제61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u>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u></p> <p>제65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노동부장관은 <u>다음 각호에 관한</u>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집행</u> 2. <u>사업수행에 필요한 고시 등 규정의 제·개정</u> 3. <u>사업성과에 관한 통계 및 지표</u> 4. <u>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p>②노동부장관은 <u>법 제71조에 따라</u></p>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현 행	개정시안
<p><u>무·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제58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u>그 권한을 위임·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제5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①공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p>②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1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교통안전공단법 (교통안전공단, 건교부)

현 행	개정시안
<p>제 4 조 (분사무소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할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 7 조 (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u>6인이내</u>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p>	<p>(삭 제)</p> <p>(수정)</p> <p>제 7 조 (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u>15인이내</u>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u>이 경우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u></p>

현 행	개정시안
<p><u>②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u></p> <p><u>③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u></p> <p><u>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u></p>	<p><u>②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u></p> <p><u>③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u></p> <p><u>④비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u></p> <p><u>⑤감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u></p> <p>(수정) 제 7 조의2 (임원의 임기) ①이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p>

현 행	개정시안
<p><u>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u></p> <p><u>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p> <p><u>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p> <p><u>2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u></p> <p><u>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u></p>	<p><u>③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u></p> <p><u>④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u></p> <p><u>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u></p> <p>(수정)</p> <p><u>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u></p> <p><u>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p> <p><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현 행	개정시안
<p><u>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u></p> <p><u>제11조 (이사회)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u></p> <p><u>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제27조 (민법의 준용)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수정) <u>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u></p> <p>(수정) <u>제11조 (이사회)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u> <u>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⑤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u></p> <p>(일부자구수정) <u>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p>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현 행	개정시안
<p>제28조 (감독) <u>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u></p>	<p>(수정) 제28조 (감독) ①<u>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u> 1. <u>각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u> 2. <u>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u> 3. <u>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u> 4. <u>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u> 5. <u>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진출</u> 6. <u>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u> 7. <u>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u></p>

(1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교부)

현 행	개정시안
<p>제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 ~ ⑥ 생략 ⑦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수정)⑦-----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 -----.</p>

(1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한국 시설안전기술공단, 건교부)

현 행	개정시안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5. “공공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u></p> <p>제26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u>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1.~10. (생략)</p> <p>제30조 (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p>(자구수정)</p> <p>제 2 조 (정의)----- ----- -----.</p> <p>5.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u> <u>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u></p> <p>(수정)</p> <p>제26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서 정한 사항을</u> 기재하여야 한다.</p> <p>1.~10. (삭제)</p> <p>(수정)</p> <p>제30조 (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1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 건교부)

현 행	개정시안
<p>제 6 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p>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 9 조 (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과 상임이사 8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p> <p>②이사장·부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p> <p>③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부이사장 및 이사는 건설교통</p>	<p>(삭제) 공공기관 운영법 조항으로 같음</p> <p>(수정)</p> <p>제 9 조 (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과 상임이사 4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삭제)</p>

현 행	개정시안
<p>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제1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제15조 (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p> <p>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p> <p>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22조 (사업 등의 위탁) ①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호의 사업(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p>	<p>④ (삭제)</p> <p>⑤ (삭제)</p> <p>(삭제) 공공기관 운영법 조항으로 같음</p> <p>(삭제) 공공기관 운영법 조항으로 같음</p> <p>(수정) 제22조 (사업 등의 위탁) ①----- ----- -----</p>

현 행	개정시안
<p>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기본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35조 (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 ----- ----- ----- -----.</p> <p>② (현행과 동일)</p> <p>(수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u>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해</u>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u>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u></p> <p>2. <u>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u></p>

현 행	개정시안
<p>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p><u>3. 각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u></p> <p><u>4. 각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u></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p>(수정) 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삭제) 공공기관 운영법 조항으로 같음</p>

(1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선박안전법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수부)

현 행	개정시안
<p>제48조 (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 사장 1인과 6인 이내의 이사 및</p>	<p>제48조 (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 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p>

현 행	개정시안
<p>감사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u>이사 6인 중 3인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u></p> <p>②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선임절차를 거쳐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u>상임이사는</u>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u>이사장이</u> 각각 임명한다.</p> <p>③<u>감사는</u> 해양수산부장관이, <u>비상임이사는</u> 이사장이 각각 임명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이사장은 감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각각 해임할 수 있다.</p> <p>④<u>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를 연임할 수 있다.</u></p> <p>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와 1인의 감사로 한다. 이 경우 임원중 이사장과 3인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u>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u></p> <p>②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u>상임이사는</u>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장의 제청으로 <u>해양수산부장관이</u> 임명한다.</p> <p>③<u>비상임이사는</u>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u>해양수산부장관이</u> 임명한다.</p> <p>④<u>감사는</u>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u>기획예산처장관이</u> 임명한다.</p> <p>⑤<u>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u></p> <p><추가>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현 행	개정시안
<p>제53조 (이사회)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단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p> <p>③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인 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p> <p>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⑥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p>	<p>2. <u>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제53조 (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p> <p>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에</p>

현 행	개정시안
<p>제58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p> <p>제59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의한 의결과 회의록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동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p>제58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6조(공단의 사업)에 명시된 <u>사업</u> 2. <u>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u> 3. <u>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u>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p> <p>제5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1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수부)

현행	개정시안
<p>제 6 조 (임원) ①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p> <p>②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 6 조 (임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p> <p>③그 밖에 임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 7 조 (이사회) ①연수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이사회를 둔다.</p> <p>②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③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 7 조 (이사회)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이사회를 둔다.</p> <p>②이사회회의 회의는 원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원장이 의장이 된다.</p> <p>③이사회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등) ①연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②연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p>	<p>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시안
<p>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연수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u>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u>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 (지도·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u> 연수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원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운영개선 또는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u></p>	<p>③연수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u>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u>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 (지도·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원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운영개선 또는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연수원에 대하여 다음</p>

현 행	개정시안
<p>경우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훈련의 방법개선 2. 해양수산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실적의 제출 3. 학사의 관리, 교직원의 복무등 운영사항의 개선 <p>제16조 (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육·훈련 개발 등 개선에 관한 사항</u> 2. <u>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 운영 등 개선에 관한 사항</u> 3. <u>해양수산분야 연구실적물 관리 등 제출에 관한 사항</u> 4. <u>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u> 5. <u>학사운영 등 교육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u> 6. <u>조직개편 등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u> 7. <u>사업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u> 8. <u>실습선 관리 및 운영사항의 개선에 관한 사항</u> <p>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u></p>

(1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독립기념관법 (독립기념관, 보존처)

현 행	개정시안
<p>제 7 조 (임원)</p> <p>③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국회의</p>	<p>(수정)</p> <p>③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u>다음 각</u></p>

현 행	개정시안
<p>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인과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여 관장이 위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보훈처의 보훈선양을 담당하는 국장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복회의 회장 <p>④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p> <p>제 8 조 (임원의 임기) ①관장을 포함한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 (이사회) ②이사회는 <u>이사장</u>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p> <p>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p>	<p><u>호의 자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u> 다만 국가보훈처의 보훈선양을 담당하는 국장과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광복회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인 2.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4인 3. 관장이 추천하는 자 <p>(수정)</p> <p>④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수정) ①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수정) ②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p> <p>(일부자구수정) ②이사장→의장</p> <p>(수정)</p> <p>③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된다.</p>

현 행	개정시안
<p>④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p> <p>⑤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8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9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일부자구수정) ④이사장 →이사회 의장</p> <p>(수정) ⑤이사회 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p> <p>(수정) 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수정)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수정)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p> <p>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p>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현 행	개정시안
<p>제21조 (지도·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기념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p> <p>제22조 (민법의 준용) 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다)와 그 부속서류</p> <p>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p> <p>(수정) 국가보훈처장은 기념관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사업실적 및 결산 3.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4.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5. 기능조정 및 인사 6. 정관 및 이사회 7. 경영혁신 및 경영실적 8. 기타 기념관 업무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수정)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1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처)

현 행	개정시안
<p>第 4 條 (定款)</p> <p>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p>	<p>제 4 조 (정관) (수정)</p> <p>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p>

현 행	개정시안
<p>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事業에 관한 事項 5. 醫學的·精神的 再活 및 職業再活의 教育·研究에 관한 事項 6. 理事會에 관한 事項 7. 任員 및 職員에 관한 事項 8. 組織에 관한 事項 9. 資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10.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11. 公告에 관한 事項 <p>第 8 條 (任員)</p> <p>①公團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인, 常任理事 4인 이내, 이사 6인 및 監事 1인을 둔다.</p> <p>②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p>	<p>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곳 4. 기본재산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조직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 12. 공고의 방법 <p>제 8 조 (임원) (수정)</p> <p>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두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p> <p>②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③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공공기관</p>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현 행	개정시안
<p>제4호의 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 2인 2.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 1인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4.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1인 <p>③削除</p> <p>④이사장·상임이사·이사 및 감</p>	<p>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④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p> <p>⑤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중 선임 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 2인 2.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 1인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4.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1인 <p>⑥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p>

현 행	개정시안
<p>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理事의 임기는 해당 職位에 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p> <p>第10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以上の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禁錮以上の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5.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 	<p>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제5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수정)</p> <p>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p>

현 행	개정시안
<p>第10條의2 (任員의 解任) ①任員이 第10條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 에는 그 任員은 當然히 退任한다. ②任免權者는 任員이 다음 各號 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身體 또는 精神상의 障礙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다고 認定 될 때 2. 職務상의 義務를 違反한 때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 하여 公團에 損失을 發生하게 한 때 <p>第11條 (理事會) ①公團에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 하게 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2. 組織에 관한 事項 3.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에 관한 事項 4. 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관한 事項 <p>5. 기타 公團運營에 관한 重要事項</p>	<p>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제10조의2 (임원의 해임) (수정)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임요청 등) 및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제48조 (경영실적 평가)의 규정에 따라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p> <p>제11조 (이사회) (수정) ①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예산·결 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장기차임금의 차입 및 그 상 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 지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의 보수 9.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현 행	개정시안
<p>②理事會는 理事長·常任理事 및 理事로 구성하며, 理事長은 理事會를 소집하고 그 議長이 된다.</p> <p>③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출석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p> <p>④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p>	<p>②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p> <p>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이사회 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⑤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정감사,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단체 협약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p>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第13條 (兼職制限) 公團의 理事長, 常任理事, 監事 및 職員은 그 職務이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理事長,</p>	<p>제13조 (겸직제한) ①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현 행	개정시안
<p>常任理事 및 監事는 國家報勳處長의, 職員은 理事長의 許可없이는 다른 職務에 종사하지 못한다.</p> <p>第19條 (事業計劃등의 承認) 理事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年度마다 公團의 事業計劃 및 豫算書를 작성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國家報勳處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第20條 (決算書의 제출) 理事長은 事業年度마다 公團의 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年度 3 월말까지 國家報勳處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상임 임원이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수정) 이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u>다만, 10억원 이하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20조 (결산서의 제출) (수정) ①이사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이사회 심의·</p>

현행	개정시안
<p>第24條 (監督) 國家報勳處長은 公團을 監督하며, 그 業務에 관한 報告 또는 書類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公團의 業務狀況 또는 그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p> <p>第25條 (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p>제24조 (감독) (수정)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년도 경영목표 2.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3. 경영실적 및 결산 4. 임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5.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6. 보상금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7.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p>제2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준용) (수정)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p>

현 행	개정시안
<p>第28條 (罰則)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이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事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虛偽報告를 한 때에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p>	<p>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8조 (벌칙) (수정) ①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1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청소년기본법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위)

현 행	개정시안
<p>제3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센터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센터는 <u>사업년도마다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3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u>매 회계연도마다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현 행	개정시안
<p>제43조 (임원) ①상담원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 의결로 선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장·이사(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이사는 이사회 의 제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감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제44조 (원장) ①원장은 이사회 의 제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원장은 상담원을 대표하고 상담원 의 사무를 통할한다.</p>	<p>제43조 (임원) ①상담원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 의결로 선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원장 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 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임원에 관하여 이 법 에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p> <p>제44조 (원장) 원장은 상담원을 대표하고 상담원 의 사무를 통할한다.</p>

(1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청소년활동진흥법 (한국청소년수련원, 청소년위)

현 행	개정시안
<p>제43조 (임원) ①한국수련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p>	<p>제43조 (임원) ①-----원장과 선임비상임이사 각 1인----- ----- ②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p>

현 행	개정시안
<p><u>서 선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u>③이사는 이사회에 제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u></p> <p><u>④감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u></p>	<p><u>천한 자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한다.</u></p> <p><u>③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한다.</u></p> <p><u>④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면한다.</u></p> <p><u>⑤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⑥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u></p>
<p>제4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수련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한국청소년수련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4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 -----사업계획서 ----- ----- -----.</p> <p><u>②한국수련원의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u></p>
<p>제46조 (민법의 준용) 한국수련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p>	<p>제46조 (타법의 준용) ----- -----</p>

현 행	개정시안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

(1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비자보호법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현 행	개정시안
<p>제38조 (임원 및 임기) ①한국소비자원에 원장·부원장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p> <p>②원장·부원장·소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p> <p>③원장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④부원장 및 이사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장은 소비자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각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⑤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⑥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신 설></p>	<p>제38조 (임원 및 임기) ①~⑥ (현행과 같음)</p> <p>⑦한국소비자원이 『공공기관의</p>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현 행	개정시안
<p>제42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u>한국 소비자자원(제51조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u></p>	<p><u>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⑧한국소비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이 제외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이 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u></p> <p>제42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u>한국소비자원(제51조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업무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u></p>

(2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청)

현 행	개정시안
<p>제125조 (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p>	<p>제125조 (임원)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는 정관이</p>

현 행	개정시안
<p>제125조 (임원) ②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경찰청장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p> <p>제125조 (임원) ②~③ <삭 제></p>
<p>제126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사무를 통할한다.</p> <p>②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제126조 (임원의 직무) ①~② <삭 제></p>
<p>제127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5조제2호가목·나목 또는 마목 내지 아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p>제127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③ <삭 제></p>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현 행	개정시안
<p>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제128조 (이사회)</p> <p>① (생 략)</p> <p>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p> <p>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p> <p>④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생 략)</p> <p>제134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28조 (이사회)</p> <p>①~⑤ <삭 제></p> <p>제134조 (예산의 편성 및 승인) ①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p> <p>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p>

현 행	개정시안
<p>제135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6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①~③ (생략) ④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공단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35조 (결산서의 제출) 〈삭 제〉</p> <p>제1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①~③ (생략) ④경찰청장은 제123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p>

제 5 장 결 론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종전의 정부 산하기관, 비영리법인 등 대부분의 공공법인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공공법인은 공익법인에서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립목적과 설립근거를 가진다. 따라서 그 설립과 운영 및 감독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따라 이들 다양한 각 공공법인들을 하나의 법률로써 그 운영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립병원이나 국립대학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 중 일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2007년에 일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 경향은 법인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설립근거법률을 제한하거나, 동일한 목적과 조직을 가지는 법인을 이원화시키는 것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 현행 법체계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아울러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동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각 개별 공공법인의 설립근거법률의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의 설립근거법률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법률은 분리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과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설립근거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향후 공공법인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공공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특별법의 체계는 일반법의 체계에 대응하는 구조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익법인과 공공법인은 민법의 비영리법인보다 특수한 목적과 설립절차 및 감독사항을 부여한 것이고, 이는 민법의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공법인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자 및 출자자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감독을 요하는 설립목적은 가진 법인인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의 설립허가주의를 적용할 수가 없다. 설립자와 허가자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립법률주의가 적용된다. 정부출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정부출자기관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은 자유설립주의이므로 설립법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출자의 근거법률은 필요하게 된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설립허가주의에 의하는 경우와 설립강제주의에 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설립강제주의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설립을 규정하여 설립 자체는 허가가 필요 없으나, 설립행위와 절차는 대부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학교법인과 학교시설을 구분하는 체계에 있다. 즉, 학교는 학교법인이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무 및 업무시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학교법인이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수 개의 수종의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의 설립근거법률은 민법의 설립허가에 대한 특별 규정 내지 법률이다. 법인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은 민법의 법인에 대한 감독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 내지 법률에 해당한다. 그 규정 내용의 성격이 구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입법들 특히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법인화에 관한 법률’은 분리되어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오류를 안고 있다.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법인의 설립근거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다. 반면에 법인의 대표기관 및 감사기관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두 감독관청의 감독권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종전에 각 소관부처별로 「소관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의 형식으로 제정·운영되던 사항이다. 원칙적으로는 자율규제는 정관으로 규정하고, 감독관청의 자율규제는 관련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리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법인의 ‘조직체계’ 및 ‘조직의 구성’, ‘업무의 수행방식’, ‘재원의 운영 및 관리방식’, ‘업무의 평가’ 등을 공공법인의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익을 위한 특별 감독이 필요한 법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자인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설립근거법률을 두는 경우와 특별한 감독규정을 두는 경우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동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개별 법률의 정비시안에서 나타나듯이 상당한 모순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감독에 관한 사항과 설립에 관한 사항은 그 적용법률을 달리하여 입법하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그 대상도 설립을 민법상 허가주의에 의하거나 자유설립주의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정부출연기관의 경우에는 각 설립법률에서 설립·운영 및 감독을 일원적으로 규정하면 충분하고, 정부투자·출자기관의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체계가 더 합리적이다. 정부보조기관으로서 민법의 설립허가주의에 따르

는 비영리법인은 그 감독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강화할 경우에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민법의 예외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립대학법인화에 관한 법률은 그 실질이 정부출연의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그 학교법인이 법률에 의하여 인가가 의제되는 학교를 운영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 이는 사립학교법 체계와 일치하게 되며, 하나의 학교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게 된다. 국립대학을 국가가 출연한 학교법인으로 정의하고, 사립대학 내지 사립학교는 개인(법인을 포함)이 출연한 학교법인으로 정의하면 명확하게 된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학교인가가 법률상 의제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머지 인가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은 사립학교의 경우와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다. 540여개의 특수법인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조직 및 운영체계 등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너무 크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강희갑, 회사법강의, 책과 사람들, 2004.

_____, “미국의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20권 4호(2002).

_____,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감사에 관한 최근의 개혁입법”, 『상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2.

_____, “미국법상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7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12.

_____,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 2000-5, 2002. 8.

_____, “우리 나라 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실태와 그 개선 방안(경영감독기능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9권 2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8).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제1권, 총칙(1), 박영사, 199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1.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06.

김남진, 행정법 I · II, 법문사, 1997.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5.

참 고 문 헌

- 김명식, “특수법인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 □□고시계□□ 46권, 2001. 10.
- _____, “행정주체로서의 특수법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01.
- _____, 특수법인론, 한국학술정보(주), 2005.
-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8.
- _____, 법사와 법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006.
- 김주수, 민법총칙, 법문사, 2006.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 김철용, 행정법 I · II, 박영사, 2005.
- 김진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에 관한 법비교적 고찰”, (비교사법 10권3호, 2003. 9., 한국비교사업학회).
- _____,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10권 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 김기열, “특수법인(연구원)에 관한 입법례 분석 및 표준입법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총서, 1997. 12.
- 김석윤, “공공법인의 최저한과세”, □□국세□□ 182호(82.04), 국세청세우회.
- 김영곤,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회운영의 활성화 방안,”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제8집, 2001.
- 권순희, “미국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최근 동향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21권 제4호, 2003.
- 권중호, “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위원회제도의 과제”, 『상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1.
- 노연희, “비영리조직의 이사회 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호(2003 가을).

- 민철구, 정부출연연구소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2.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6.
-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 I · II, 박영사, 1997.
-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 유성재 · 손태원 · 이정원,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경영모형, 2002.
- 양동석, “임원제도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 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연구』 제19권 3호, 2001.
- 이종수, “공공법인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권과 단체협약”, □□월간 노동법학□□ 144, 2003. 5., 중앙경제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4.
- 서완석 · 하삼주, “현행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법학의 전망』(평성 임흥근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법문사, 2003.
- 안동섭, 상법강의(II) 회사법, 법률행정연구원, 1999.
- 안성포, “이사의 면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2권 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 _____,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의 지배구조”, 단국대 법학논총, 2005.
- 안태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21권 2호, 2002.

참 고 문 헌

- 양동석,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업법연구』(한국기업법학회), 제8집, 2001.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4.
- 정구현,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2권 1호.
-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1999.
- 최병규, “증권거래법·상법상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세기 한국상사법의 진로』(우홍구박사 정년논문집), 2002.
- 최완진,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감사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21세기 한국상사법의 진로』(우홍구박사 정년 논문집), 2002.
- 한국법제연구원, 일본의 국립대학법인법 연구, 2005. 12.
- _____,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2006.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하), 2005.
-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01.

[외국문헌]

- 近藤光男, “執行役”, 民商法雜誌, 第126卷 第4・5號 (2002. 8. 15).
- 北村雅史, “經營機構改革”, 『商事法務』No. 1603(商事法務研究會, 2001. 8. 25).
- 武井一浩, “米國取締役會の實態と日本への導入上の問題(I)”, 『商事法務』 No. 1505(日本商事法務研究會, 1998. 10. 5), 동(II), 『商事法務』 No. 1506(1998. 10.25), 동(III), 『商事法務』 No. 1508(1998.

11. 15), 동(IV), 『商事法務』No. 1509(1998. 11. 15), 동(V), 『商事法務』 No. 1511(1998. 12. 5).
- しし戸善一, “日米比較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と商法改正論議への示唆”, 『民商法雑誌』第117卷 4・5(1998).
- 畠田公明, “執行役員の法的地位と責任”, 『商事法務』No. 1505(商事法務研究会, 1998. 10. 5).
- O’Neil, M. The third America: the emergence of the nonprofit sector in the United State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1989.
- Cook & Brown, Most effective and least effective boards of nonprofit human service agencies, Group & Organisation Studies, 15(4), 1999.
- The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vol. 1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94.
- Henn & Alexander, Laws of Corporations, West Publishing Co., 1983.
- Charles R. T. O’ Kelle / Robert B. Thompson,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Associations, Aspen Law & Business, New York, 1999.
- Ro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West Publishing Co., 1996.
- Melvin Aron Eisenberg, “An Overview of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48 The Bus Law, 1271(August 1993).
- Karsten Schmidt, Gesellschaftsrecht, 3. Auflage, 1997.
- Stanley C. Vance, “New Dimensions for Boards of Directors, A speculation in the changing role of the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The conference Board RECORD, November 1971.